

강원도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방안



연구진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양은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제 출 문

강원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 「강원도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중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이론고찰 및 현황분석	11
제1절 주민자치와 읍면동	11
1. 주민자치의 개념과 필요성	11
2.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조직 현황	13
제2절 주민자치회	27
1. 주민자치회 개요	27
2. 주민자치회 표준모델 유형	32
3. 주민자치회 지위와 기능	38
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세부내용	39
제3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분석	45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국 현황	45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강원도 현황	56



제3장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활용방안	67
제1절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개요	67
제2절 협의 업무	70
1. 개요 및 추진계획	70
2. 세부내용	71
제3절 위탁업무	74
1. 개요 및 추진계획	74
2. 세부내용	74
제4절 주민자치업무	80
1. 개요 및 추진계획	80
2. 세부내용	80
 제4장 주민자치회 지원방안	 97
제1절 중앙정부의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97
1. 공무원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	97
2. 주민자치회 매뉴얼 개발	98
3. 주민자치회 관련 인센티브	99
4.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제정 추진	100
5. 주민자치 전문 인력양성	10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지원책	102
1.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화 및 대표성 확보 ..	102
2. 주민자치회 전담 부서 설치	103





3.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103
4. 주민자치회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105
5.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107
6. 주민자치회 평가체계 구축	108

제3절 주민과 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109
1.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9
2. 주민참여와 자원봉사자 활성화	110
3. 운영재원의 확보방안	111
4.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113
5. 주민의견 수렴	114

제5장 결 론	119
---------------	-----

참고문헌	123
------------	-----

참고자료	127
------------	-----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	13
<표 2-2>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14
<표 2-3>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15
<표 2-4> 전국 읍면동 현황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16
<표 2-5>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18
<표 2-6>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19
<표 2-7> 강원도 읍면동 현황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22
<표 2-8>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24
<표 2-9>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비교	26
<표 2-10> 주민자치의 법적근거	28
<표 2-11> 주민자치회의 지위·기능에 따른 3가지 추진모델	29
<표 2-12> 주민자치회 지역복지형 사례	33
<표 2-13> 주민자치회 안심마을형 사례	34
<표 2-14> 주민자치회 마을기업형 사례	35
<표 2-15> 주민자치회 평생교육형 사례	35
<표 2-16> 주민자치회 도심창조형 사례	36
<표 2-17> 주민자치회 지역자원형 사례	36
<표 2-18> 다문화 어울림형 주민자치 내용	37
<표 2-19> 주민자치회 다문화 어울림형 사례	37
<표 2-20> 주민자치회의 기능	38
<표 2-2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최종선정지역	40
<표 2-2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41
<표 2-23> 주민자치회의 구성	42
<표 2-24> 주민자치회의 구성	43





<표 2-25> 시범실시 우수기관(공무원) 선정 및 포상 계획('14년 하반기 추진)	44
<표 2-2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최종선정지역	46
<표 2-2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공모델 유형	47
<표 2-28> 마을기업형 위한 활용내용	53
<표 2-29> 도심창조형을 위한 활용내용	53
<표 2-30> 지역자원형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내용	54
<표 2-3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현황	59
<표 2-32>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주민자치회 업무분석	59
<표 2-3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역할	60
<표 2-3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주민자치회 업무분석	63
<표 3-1> 읍면동 행정업무	67
<표 3-2> 읍면동 일반행정 주요 단위사무	68
<표 3-3> 읍면동 및 주민자치회 기능 분류(예)	69
<표 3-4> 주민자치회 협의업무 예시	71
<표 3-5> 주민자치회 위탁업무 예시	74
<표 3-6>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업무 예시	80
<표 3-7> 지역순찰 운영방침	85
<표 3-8> 마을안전지도 작성원칙	87
<표 3-9> 안전마을 환경정비	88
<표 3-10> 안전교실 대상 및 프로그램	89
<표 4-1> 주민자치회 매뉴얼	99
<표 4-2> 주민자치회 자원 확보방안	112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1-1> 연구의 체계	6
<그림 2-1> 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율	15
<그림 2-2> 전국 시도별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16
<그림 2-3>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17
<그림 2-4> 전국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19
<그림 2-5>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율	21
<그림 2-6> 강원도 시군별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21
<그림 2-7> 전국 주민자치센터와 강원도 설치율 비교	23
<그림 2-8>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23
<그림 2-9> 전국 주민자치센터와 강원도의 운영 프로그램 현황 비교	25
<그림 2-1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원칙	31
<그림 2-11> 주민자치회 추진모델 7개 유형	32
<그림 2-12>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기능강화 ·	38
<그림 2-13> 주민자치회로 부여되는 업무	39
<그림 3-1> 주민자치회 협의업무 추진 흐름도	70
<그림 3-2>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업무 추진 흐름도	80
<그림 4-1> 주민자치회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9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1995년 민선시대가 개막되면서 중앙 집권위주의 행정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위한 행정체계의 변화를 가져옴
 - 행정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중앙정부의 수동적인 행위자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를 위한 능동적인 참여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999년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과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읍면동의 업무를 축소하는 대신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보다는 문화, 여가 및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한계가 드러남
- 또한 전세계적으로 지방자치와 더불어 주민자치, 분권, 거버넌스 등의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한 맥락에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행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시범실시(1년)를 통한 성공모델 창출 및 개별 법률 제정으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그러나 현실은 일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이던, 안심마을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이던, 주민자치회 역량이 미흡한 실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고 긴급히 요구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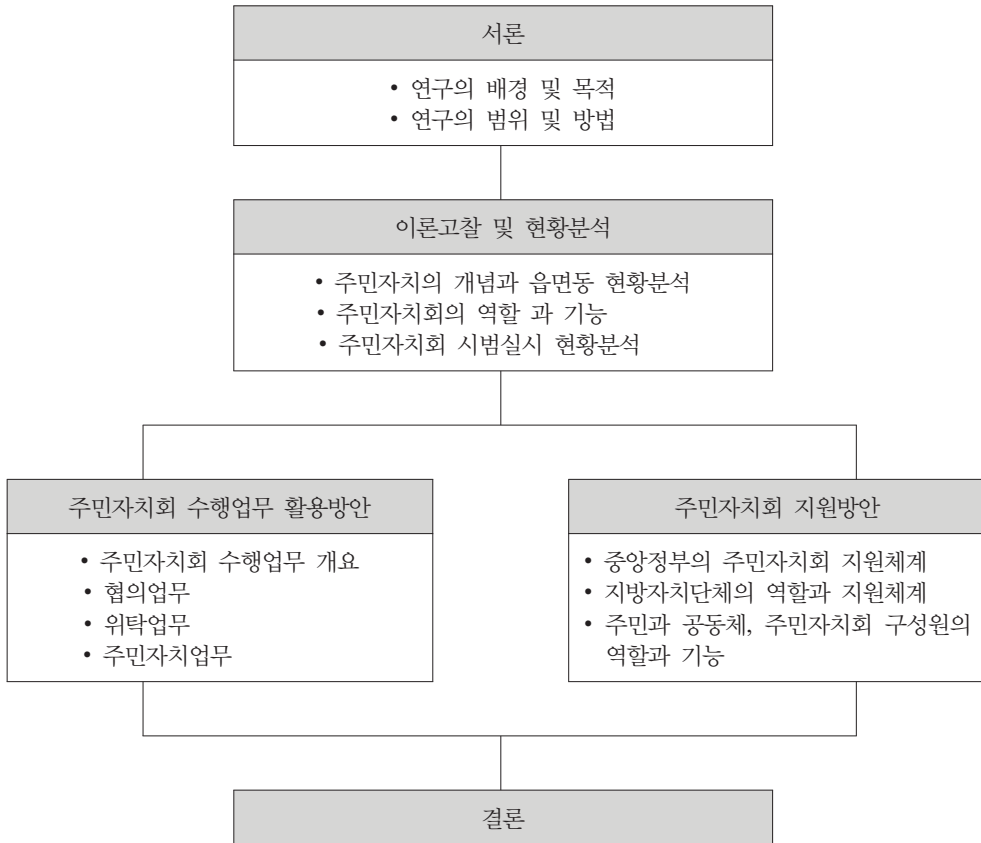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안전행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시범실시 이후 추진될 예정인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
- 둘째,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에서 시범실시되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긴급 교육과 컨설팅의 요구에 대응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활용업무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셋째,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복지와 안심마을 뿐만 아니라 사회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 주민주도의 생활자치, 근린자치를 도모하고자 함
-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주민자치회 정책에 대응하고 강원도 시범실시 예정인 주민자치회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국적인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주민자치의 개념과 읍면동 현황분석
 - 주민자치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정리하고,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
- 주민자치회 현황 분석
 -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정리하고, 시범실시 되고 있는 전국 현황 및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의 주민자치회의 현황을 분석함
- 주민자치회 활용방안 제시
 -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유형중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자치회에 협의, 위탁, 주민자치업무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 주민자치회 지원방안 마련
 -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의 주민자치회를 위한 지원체계를 제시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방안, 주민과 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여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그림 1-1> 연구의 체계



2.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기존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등의 자료수집과 현황 분석,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강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함
 - 정부 발간자료, 정부의 각종 관련 보도자료, 학회 연구자료
 - 언론보도 자료 등에 대한 수집과 분석

- 다양한 연구진들의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통계자료

관련 법규 검토 및 통계자료 분석

- 주민자치회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각종 통계자료를 통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분석함

심층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담당자 인터뷰와 사례지역 방문을 통한 심층적인 현장조사 등의 실증연구를 실시
-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방향 조정 및 연구결과 내실화를 기함

제2장

이론고찰 및 현황분석

제1절 주민자치와 읍면동

제2절 주민자치회

제3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분석

제 2 장

이론고찰 및 현황분석

제1절 주민자치와 읍면동

1. 주민자치의 개념과 필요성

□ 주민자치의 개념

- 주민이란 「지방자치법」¹⁾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이며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주요결정에 참여를 요구하고, 참여해야하는 책무를 가짐
- 주민자치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여 지방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자치제도임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
 - 즉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지방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
- 주민자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 Huntington(1976)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 하는 일반 주민의 행위”

1)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Verba(1967)는 “공식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행위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
- 이규환(1990)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 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 김필두 외(2011)는 “지역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주민자치의 필요성

- 지방자치는 그 지방의 주인인 주민이 중심이 되어 행정이 실시되어야 하며, 주민중심의 행정체계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지방행정에 주민자치의 실현으로 지방행정의 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함
- 주민자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주민의 정치참여의 기반을 강화시킴
-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의 경험과 노하우는 당면한 지역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며, 활용가능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파악이 용이함
-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이해관계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함으로 정책 집행의 순응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 주민자치의 실현으로 협동의식의 고취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며 나아가 주민의 참여로 인한 정치의 불신이 감소되어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함
- 주민자치는 지역문제에 대한 관 주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과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회복에 기여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시킴

2.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조직 현황

□ 주민자치센터 개요

-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인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력을 위한 주민자치조직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음
 - 주민자치센터는 1998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추진한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은 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를 시군구청으로 이관하여 신속한 행정의 수행과 중복행정의 방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함
 - 또한 사무와 인력의 시군구청의 이관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함

<표 2-1>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

<p>○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의 시군구청의 이관에 의한 신속한 행정의 수행과 중복행정의 방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 -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 - 사무와 인력의 시군구청의 이관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의 역할 제고
--

- 주민자치센터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지역발전·인보·협동 등을 논의하는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생활·지역복지·여가선용·생활정보 교환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
 -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의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와 여가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활동의 장으로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표 2-2>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분류	주요기능
주민자치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정비, 자율방재활동, 자연보호 순찰대, 자원봉사, 마을 청소, 재활용품 수집 등
문화·여가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음악감상실, 취미교실, 강연회, 생활체육 등
지역복지	보건진료센터, 경로시설, 예식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탁아방, 독거노인무료빨래방, 사랑의 빵 나누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주민편익	회의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동아리모임, 시민사랑방, 알뜰시장, 생활정보제공 등
시민교육	시민교육,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노인교실, 지역문화재탐방 등
지역사회진흥	소비절약, 봉사활동, 지역축제, 지역문화알리기, 지역특산품매장, 시민공원조성,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영농지원	농업정보, 특산물 전시, 생업전문교육 등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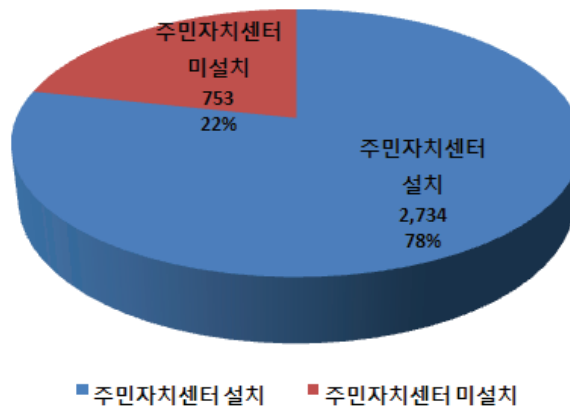
<표 2-3>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하는 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에서 자치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읍면동장이 위촉
- 다만, 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언론계, 문화·예술계, 과학계, 경제계, 직능단체,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1/3이상을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이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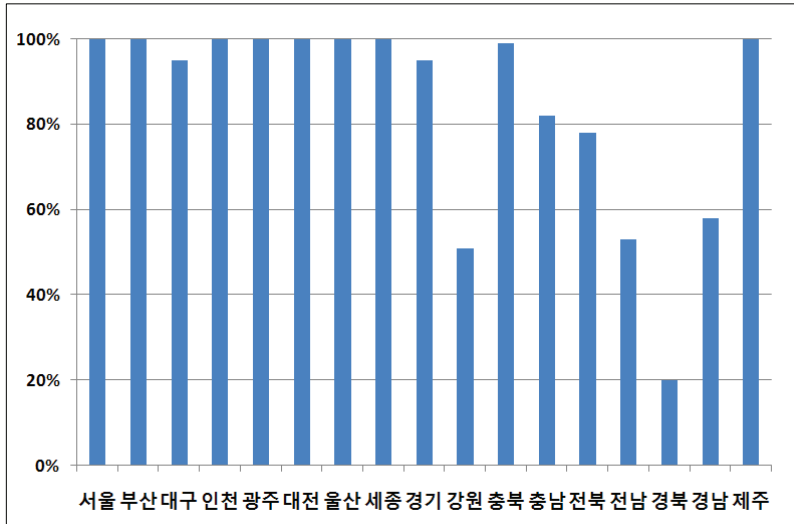
□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분석

- **(설치·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전국 3,487개의 읍면동 중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은 78%인 2,734개임
-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51%), 충남(82%), 전북(78%), 전남(53%), 경북(20%), 경남(58%)을 제외하고는 90%이상의 높은 설치율을 나타냄
 - 특히 경북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율이 20%로 매우 저조함

<그림 2-1> 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율



<그림 2-2> 전국 시도별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표 2-4> 전국 읍면동 현황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2013년 1월 1일 기준,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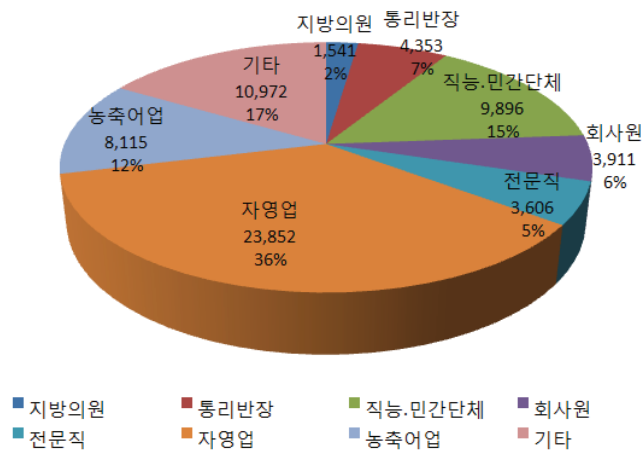
시도	계			읍			면			동		
	총수	설치수	설치율	총수	설치수	설치율	총수	설치수	설치율	총수	설치수	설치율
계	3,487	2,734	78%	216	142	66%	1,198	612	51%	2,073	1,980	96%
서울	423	423	100%	-	-	-	-	-	-	423	423	100%
부산	214	214	100%	2	2	100%	3	3	100%	209	209	100%
대구	139	132	95%	3	1	33%	6	1	17%	130	130	100%
인천	146	146	100%	1	1	100%	19	19	100%	126	126	100%
광주	94	94	100%	-	-	-	-	-	-	94	94	100%
대전	77	77	100%	-	-	-	-	-	-	77	77	100%
울산	56	56	100%	4	4	100%	8	8	100%	44	44	100%
세종	11	11	100%	1	1	100%	9	9	100%	1	1	100%
경기	547	522	95%	32	30	94%	109	100	92%	406	392	97%
강원	193	99	51%	24	9	38%	95	26	27%	74	64	86%

시도	계			읍			면			동		
	총수	설치수	설치율	총수	설치수	설치율	총수	설치수	설치율	총수	설치수	설치율
충북	153	152	99%	15	14	93%	87	87	100%	51	51	100%
충남	205	168	82%	24	20	83%	137	111	81%	44	37	84%
전북	241	189	78%	14	9	64%	145	100	69%	82	80	98%
전남	296	156	53%	33	18	55%	196	71	36%	67	67	100%
경북	331	67	20%	36	14	39%	202	20	10%	93	33	35%
경남	318	185	58%	20	12	60%	177	52	29%	121	121	100%
제주	43	43	100%	7	7	100%	5	5	100%	31	31	100%

※ 참고 : 안전행정부(2013), 2013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위원구성현황)**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총 66,247명이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 종사자로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축어업 종사자(12%), 직능민간단체 종사자(15%)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문가와 주부(기타), 회사원 등의 활동이 매우 미흡하며, 다양한 계층의 위원구성이 요구됨

<그림 2-3>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 기타 직업은 주부, 무직, 목사, 공무원 등임

<표 2-5>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2013년 1월 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지방의원	통리반장	직능· 민간단체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	농축어업	기타
계	66,247	1,541	4,353	9,896	3,911	3,606	23,852	8,115	10,972
서울	9,118	3	507	2,718	461	817	3,310	28	1,274
부산	5,480	246	125	457	392	511	2,681	81	987
대구	3,508	143	94	398	216	195	1,823	61	578
인천	3,606	240	187	355	266	170	1,474	232	682
광주	2,486	32	115	220	140	124	1,363	118	374
대전	1,650	26	78	152	133	89	916	44	212
울산	1,344	23	48	230	114	68	515	86	260
세종	267	3	19	33	18	12	74	73	35
경기	13,008	298	695	1,280	1,068	899	4,916	1,177	2,675
강원	2,829	142	293	557	172	110	720	262	573
충북	3,990	98	363	667	182	98	974	1,086	522
충남	3,782	15	302	561	160	74	948	1,250	472
전북	4,490	112	546	499	144	85	1,181	1,402	521
전남	3,687	95	326	520	125	110	948	1,038	525
경북	1,485	22	122	332	67	17	348	317	260
경남	4,481	43	396	819	192	153	1,375	616	887
제주	1,036		137	98	61	74	286	244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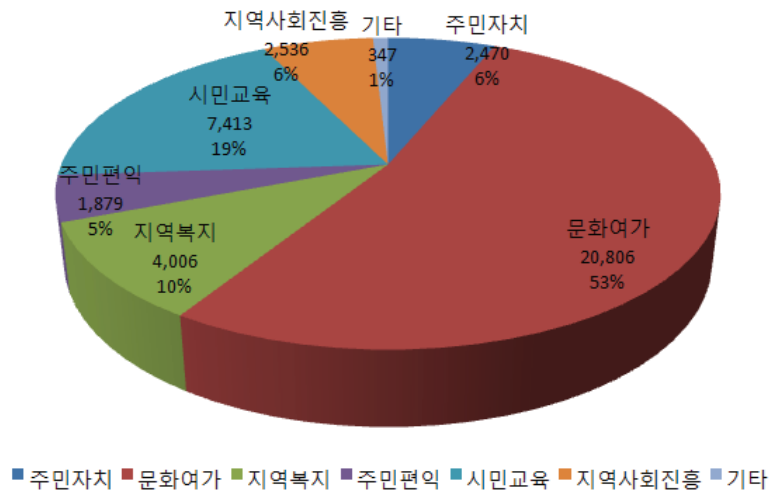
※ 기타 직업은 주부, 무직, 목사, 공무원 등임

※ 참고 : 안전행정부(2013), 2013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운영 프로그램 현황)** 전국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유형은 2013년 기준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전체의 53%인 20,806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문화·여가에 치중된 경향이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시민교육이 전체 19%인 7,413개로 나타났음
- 문화·여가에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비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복지(10%)와 지역사회진흥(6%)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함
-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6%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실정임

<그림 2-4> 전국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표 2-6>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2013년 1월 1일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기타
계	39,457	2,470	20,806	4,006	1,879	7,413	2,536	347
서울	9,758	765	4,693	926	737	1,768	827	42
부산	4,594	468	1,620	697	304	990	464	51
대구	858	0	546	119	38	154	1	0
인천	2,146	47	1,204	230	33	519	103	10
광주	521	9	346	66	1	88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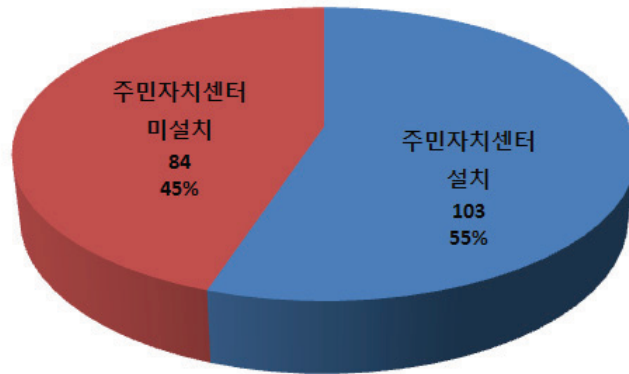
구분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기타
대전	839	23	483	127	92	97	17	0
울산	930	63	508	100	40	116	102	1
세종	91	0	66	2	0	15	0	8
경기	10,612	389	5,661	969	324	2,632	455	182
강원	933	61	597	74	52	72	54	23
충북	1,013	31	818	68	8	84	2	2
충남	1,501	203	991	102	33	112	60	0
전북	1,254	34	875	145	32	141	25	2
전남	878	44	549	68	38	135	31	13
경북	483	4	392	16	9	53	5	4
경남	1,614	73	1,083	142	41	203	71	1
제주	1,432	256	374	155	97	234	314	2

※ 참고 : 안전행정부(2013), 2013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강원도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분석

- **(설치·운영현황)** 강원도에는 2013년 9월 기준 187개의 읍면동이 있으며, 그중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은 55%인 103개임
- 강원도 시군별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동해, 태백, 속초, 양구, 인제, 고성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설치율이 100%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춘천(72%), 원주(56%), 강릉(90%)으로 나타남
 - 강원도 주민센터 설치율 평균인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은 홍천(10%), 횡성(33%), 영월(11%), 정선(11%), 철원(17%), 화천(40%), 양양(17%) 이 있음
 - 또한 삼척과 평창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설치율이 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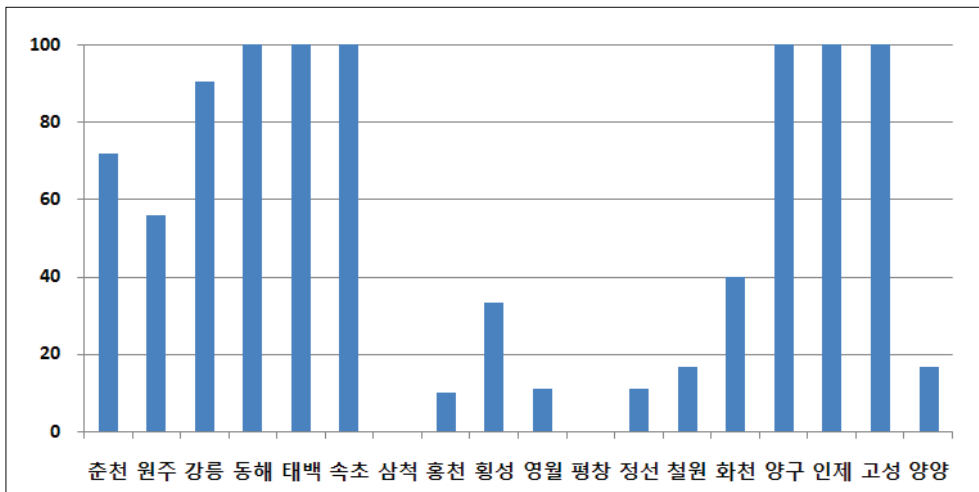
<그림 2-5>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율



■ 주민자치센터 설치 ■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 참고 : 강원도 내부자료(2013년 9월 기준)

<그림 2-6> 강원도 시군별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표 2-7> 강원도 읍면동 현황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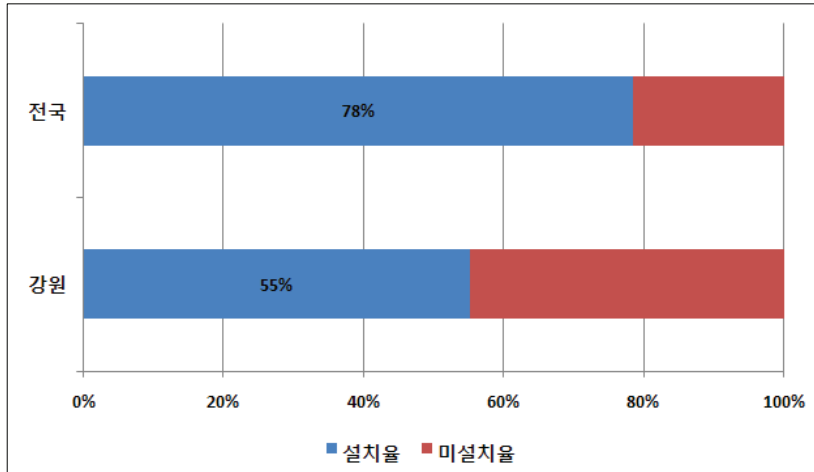
(2013년 9월 기준, 단위 : 개)

시군	총수	설치율	설치수	미설치수
계	187	55%	103	84
춘천	25	72%	18	7
원주	25	56%	14	11
강릉	21	90%	19	2
동해	10	100%	10	
태백	8	100%	8	
속초	8	100%	8	
삼척	12	0%		12
홍천	10	10%	1	9
횡성	9	33%	3	6
영월	9	11%	1	8
평창	8	0%		8
정선	9	11%	1	8
철원	6	17%	1	5
화천	5	40%	2	3
양구	5	100%	5	
인제	6	100%	6	
고성	5	100%	5	
양양	6	17%	1	5

※ 참고 : 강원도 내부자료(2013년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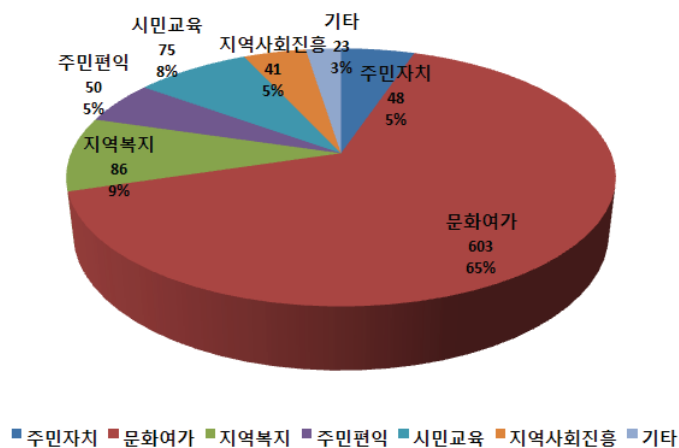
- 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율(2013년 1월 기준)과 강원도 설치율(2013년 9월 기준)을 비교하면 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율은 78%를 보이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55%로 상당히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2-7> 전국 주민자치센터와 강원도 설치율 비교



- **(운영 프로그램 현황)** 강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유형은 2013년 9월 기준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전체의 65%인 603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 프로그램이 문화·여가에 치중된 경향이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지역복지가 전체 9%인 86개, 시민교육이 8%(75개), 주민자치(5%), 주민편익(5%), 지역사회진흥(5%), 기타(3%)로 나타남

<그림 2-8>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 참고 : 강원도 내부자료(2013년 9월 기준)

<표 2-8>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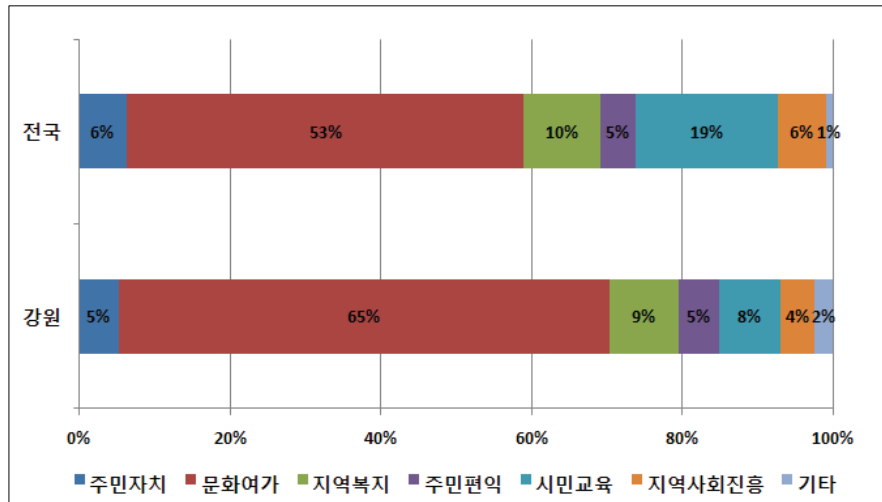
(2013년 9월 기준, 단위:개)

구분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기타
계	926	48	603	86	50	75	41	23
춘천	146	2	123	15	3	3		
원주	124		79	14	5	26		
강릉	164	12	89	14	10	27	10	2
동해	73	8	44	7	1	6	6	1
태백	65	7	24	10	6	3	11	4
속초	82	7	37	19	10	4	5	
홍천	5		5					
횡성	88		88					
영월	4	1	3					
정선	5		5					
철원	7		5	2				
화천	11		10		1			
양구	43	2	27	2	6	1	4	1
인제	40	5	32	1		2		
고성	64	4	27	2	8	3	5	15
양양	5		5					

※ 참고 : 강원도 내부자료(2013년 9월 기준)

- 강원도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65%로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비중(5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비율은 문화·여가를 제외하고는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강원도에서는 8%로 전국 현황(19%)보다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함

<그림 2-9> 전국 주민자치센터와 강원도의 운영 프로그램 현황 비교



□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 첫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기능의 강화라는 측면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문화·여가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이로 인해 문화·여가·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함
 -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인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치기능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매우 낮음
 - 프로그램이 타 문화센터나 복지회관 등과의 차별성이 없으며, 지역의 주민자치를 위한 고려가 미흡함
 -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지역주민으로서의 대표성이 미약하고 역할이 부재함
 -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자영업종사자와, 직능민간단체, 농축어업 중

- 사자 등의 비중이 높고, 일반 주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있어 지역유지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지역주민으로서의 대표성이 미약함
 -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명확한 업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역할이 부재함
- 셋째, 제도적인 취약성과 주민자치에 걸맞지 않는 시민 참여의 소극성, 형식적인 명맥의 유지 등으로 주민자치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체감도가 매우 낮으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됨

<표 2-9>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근거	시·군·구 조례*	시·군·구 조례
형태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읍면동 자문기구
위촉권자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대표성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지역유지중심, 대표성 미약
기능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 심의 구역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지자체가 위임 위탁한 사무처리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재정	자체재원(수익, 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	읍면동 사무소 지원 외에 별도 재원 거의 없음
지자체와의 관계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의거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행함

- 따라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지 못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기능의 확대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논의하

고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협력의 근린자치 모델로서 주민자치회의 추진이 요구됨

제2절 주민자치회

1. 주민자치회 개요

□ 주민자치회 배경

- 지난 1999년 이래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적인 취약성과 주민자치에 걸맞지 않는 시민 참여의 소극성, 형식적인 명맥의 유지 등으로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체감도가 매우 낮으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됨
-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점에서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가 대두됨
 - 이에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²⁾을 통해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구상함

□ 주민자치회 개념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함

2) 이 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0> 주민자치의 법적근거

<p>「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p> <p>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p> <p>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p>
--

-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임
-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행정기능 중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내 주민 자치조직임
-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지역주민들이 읍면동 행정의 중점방향을 정하는데 참여하고 일부 행정기능도 직접 수행함으로써, 읍면동이 주민 자치의 거점이 되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주민자치회 추진모델

-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로서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등 3개안을 제시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서는 협력형을 최종 선정함
 - 협력형 : 읍면동사무소는 현행 기능을 유지하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행정기능을 협의심의하면서 주민자치회 사무를 직접 수행함
 - 통합형 : 읍면동 행정기능과 주민자치회 사무를 함께 수행하며,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구 즉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합한 것

- 주민조직형 : 읍면동 행정기능은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무만을 결정하고 집행

<표 2-11> 주민자치회의 지위·기능에 따른 3가지 추진모델

모델	주민자치회 관련 조직구성 및 기능	비 고
협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시범사업 ▶ 주민자치회는 현 읍면동사무소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심의적 지위를 가짐
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개정 필요 ▶ 주민자치회 안에 심의기구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기구를 구성
주민조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개정 필요 ▶ 주민자치회 안에 심의의결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기구로서의 읍면동 사무소를 구성

□ 주민자치회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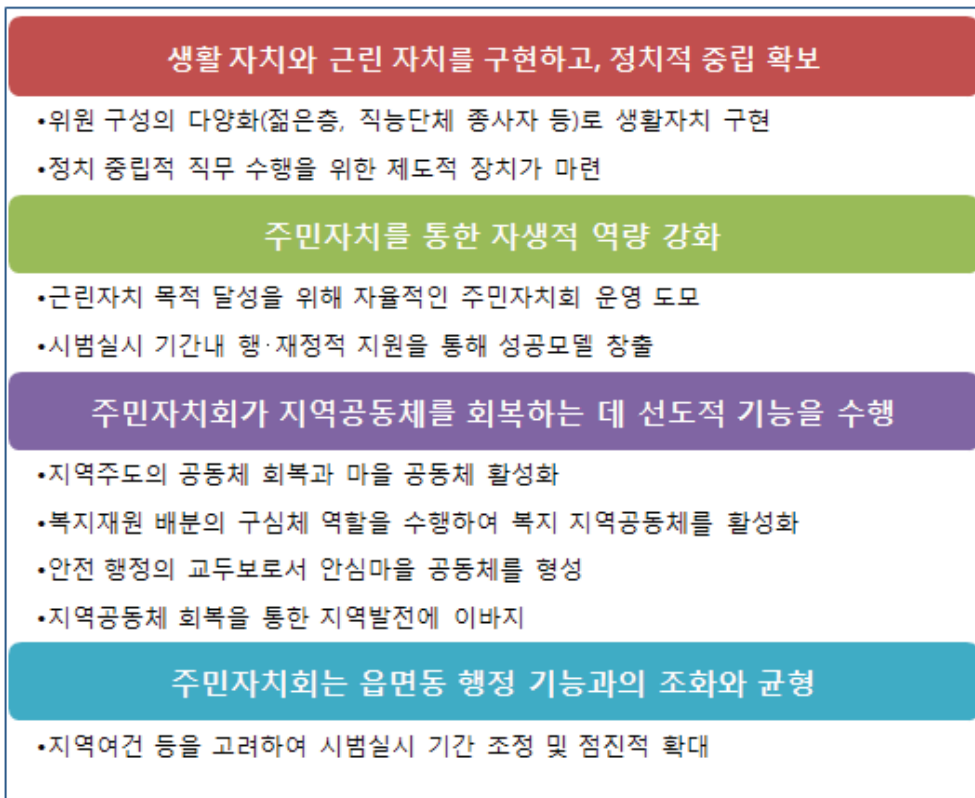
- 주민자치회 모델(안) 마련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반영
 -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기능 등에 따라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의 3가지 모델(안) 도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방향’ 의결(제21차 본위원회, '12.12월)
 - 현 단계에서 실현가능한 협력형 우선 추진, 시범실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
 - 통합형, 주민조직형은 현행 법령에 위반되어 시범실시 불가, 법제처 의견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목적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제도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지역맞춤형 주민자치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전국적 확산 유도
- 읍면동 행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읍면동 행정의 고유업무를 제외하고 일부 행정기능에 대해 주민자치회에 사전협의하거나 위탁처리하고 순수 주민자치 업무 추진을 통한 주민참여형 생활자치 구현
- 주민자치회 제도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판단
 - 주민자치회 모델 설치운영의 적합성 여부
 -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역할수행 여부
 - 특별법에 규정된 기능의 수행가능 여부
- 전면 실시전 주민자치회 제도 사전검토, 시행착오 최소화
 - 시범실시 결과 평가를 통해 제도 보완대책 마련

- 최종주민자치회 모델 및 설치 운영방안 확정
-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입법사항 도출
- 국민시민단체, 지방의원,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인식제고 및 제도의 수용성 확보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

<그림 2-1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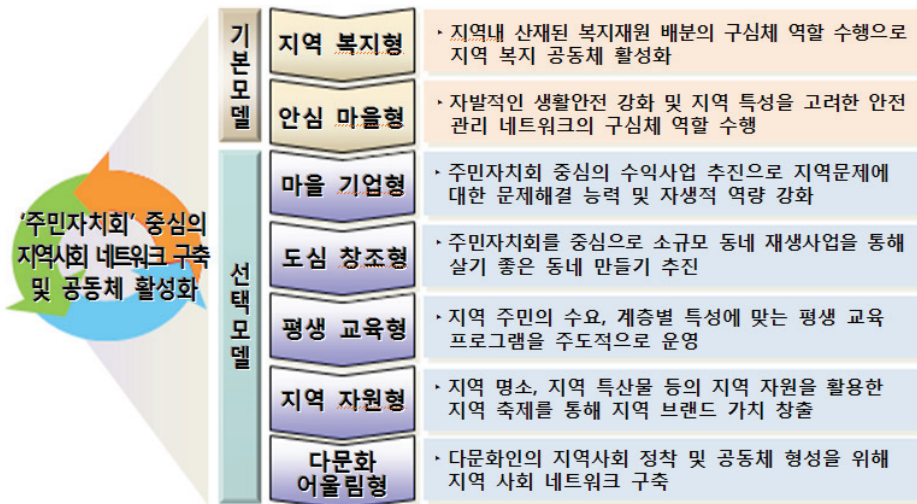


2. 주민자치회 표준모델 유형

□ 주민자치회 표준모델 개요

- 주민자치회 성공모델의 개발과 유형화를 통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과 주민자치 설치 운영의 방향을 제시, 주민주도의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확산을 유도하여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제도의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민자치회 유형으로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 7개 유형을 제시함

<그림 2-11> 주민자치회 추진모델 7개 유형



□ 지역 복지형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가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자원 발굴·배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
 - 읍면동 사무소에서 수행하던 복지기능의 일부 수행으로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을 발굴·배분할 수 있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최근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업무 과중에 따른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
- 지역복지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① 나눔활동, ② 방문활동, ③ 집수리 등의 환경개선, ④ 의료 및 재능기부, ⑤ 아동 돌봄센터 및 공부방 운영, ⑥ 나눔장터 등의 사업을 추진함

<표 2-12> 주민자치회 지역복지형 사례

- ❖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술안말 벼룩시장’
 - ▶ ‘06년부터 주민자치사업으로 추진된 ‘술안말 벼룩시장’은 ’12년 400여명의 주민이 판매자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판매액의 10%를 기부
 - ▶ 벼룩시장의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23세대를 지원
- ❖ 경기 부천시 성곡동 ‘어함모’ 사업
 - ▶ ‘어려움을 함께하는 모임’으로, 실제로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한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웃들을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사랑공동체 모임 추진(277세대 99,498천원 지원)
- ❖ 경남 진주시 금산면 ‘더 나은 서로 상생하는 금산면 좋은세상 만들기’
 - ▶ 법정수급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 주민을 발굴하여 전문기술봉사자,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최소한의 재료비, 노력 등으로 나눔의 정신 실천

□ 안심마을형 주민자치

- 자발적인 생활안전 강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 및 재난 관리 네트워크의 역할 수행
 - 안심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을안전지도 제작, 설문조사, 안전·위해요소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임
 - 지역 내 안전 유해 요소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임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① 4대악 등 범죄예방, ② 교통안전 ③ 재난대비 ④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안전 ⑤ 농작물 안전 ⑥ 기타 안전활동으로 추진하되 ⑦ 안전을 위한 마을환경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는 안전네트워크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취약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 수행

<표 2-13> 주민자치회 안심마을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부천시 범박동 ‘어머니 자율 방법 순찰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도 위원회(10명) 주관으로 취약지역 및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 ❖ 부산 사상구 주례1동 ‘밤길 밝히는 등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년회와 합동으로 자율방법대 주2회 야간순찰 활동 전개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학교 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전문가, 학생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청소년 유해환경을 예방하고 개선 ❖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안전하고 깨끗한 창신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협의회, 창신시장상우회, 덕산파출소와 공동 주관으로 화재나 응급상황시 차량 출동 지연의 원인인 상가 상품을 정리하고 이륜차 평행주차 확보를 위한 도로 경계선 재도색 등 추진

□ 마을기업형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 중심의 수익사업 추진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및 자생적 역량 강화
- 지역 내 자원과 폐자원, 재활용 등을 활용해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마을기업형은 ① 지역 내 자원활용 마을기업, ② 폐자원 활용 마을기업, ③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 마을기업, ④ 기타 마을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표 2-14> 주민자치회 마을기업형 사례

- ❖ 서울 마포구 연남동 올레 마을
 - ▶ 자치센터 내 농수산물 직거래 상설매장 설치로 도시형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창출
 - ▶ '10년 기준 판매실적 : 1,500만원(사회복지 시설 후원 및 타 사업비로 활용)
- ❖ 제주 한림읍 해녀전통문화 체험교실
 - ▶ '07년 제주시 한림읍 주민자치센터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해녀전통문화 체험교실' 이 제주도 관광프로그램으로 정착
 - ▶ 한림읍 주민으로 구성된 '한수풀해녀학교'에서 제주도 내·외 주민들 50여명을 대상으로 20주간 해녀체험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형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 주도로 지역 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표 2-15> 주민자치회 평생교육형 사례

- ❖ 광주 북구 두암3동 '평생학습도시 두암권역 거점센터'
 - ▶ 방과후 아동지도사 기본과정, 행복한 가정만들기 코디네이터, 방과후 아동지도사 사례관리과정 등 민·관·학 연계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
- ❖ 서울 노원구 공릉2동 '해피실버'
 - ▶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해피특강, 웰빙체조 등을 실시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심창조형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과 주민의 특성을 살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닌 소규모 동네 재생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추진
 - 도심창조형은 지역주민의 정체성(주민성)과 마을공동체성(마을성)의 회복에 의의가 있음
 - 도심창조형 사업은 마을과 주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마을로서 마을의 유무형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의미함

<표 2-16> 주민자치회 도심창조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북구 임동 ‘폐시장의 재생, 대원시장’<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시장에 젊은 지역 예술인을 유치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거점지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예술인과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새로운 활로 개척(보조금 9천만원)❖ 부산 사상구 주례1동 ‘온골 행복마을 만들기’<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반시설이 노후 되고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저소득·소외계층 밀집지역에 희망시장·느티나무 도서관, 쌈지공원 조성, 굴다리 환경 개선 등 추진(시 사업비 6억원 지원)

지역자원형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가 주도로 지역명소, 특산물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표 2-17> 주민자치회 지역자원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광주시 퇴촌남중면 ‘토마토토(심벌 캐릭터)와 함께하는 신명나는 축제마을 만들기’<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토마토주스 무료 시음회, 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부스 운영, 자치센터 공연, 토마토 품평회 등 운영❖ 전남 순천시 풍덕동 ‘동네방네 마을축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덕동 동천을 활용하여 동천 장미그림그리기 행사, 먹거리장터, 장미 추억 행사, 풍선아트 등을 추진(축제 수익금 중 100만원은 2012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금으로 기부)
--

다문화 어울림형 주민자치

- 다문화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체 역할 수행
 - 다문화 어울림형 주민자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며 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다문화 어울림형 주민자치의 사업은 ① 적응 및 자립을 위한 사업, ② 지역 사회 소통을 위한 사업, ③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적응 및 자립을 위한 사업 : 다문화 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이해와 문화체험, 정보제공 등이 요구됨
-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사업 : 다문화 주민이 지역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며, 다문화 주민이 지역사회에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의 확립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어울림 문화가 조성됨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 다양한 축제 등을 통한 다문화 주민과 지역주민의 정보교류와 소통, 화합을 위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표 2-18> 다문화 어울림형 주민자치 내용

구분	다문화 어울림형 주민자치 내용
적응 및 자립을 위한 사업	다문화 교실, 한국어 강좌, 문화체험교실, 김장담그기 체험, 생활정보 교실 등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사업	다문화인과의 모녀결연, 농촌 일손돕기, 각종 봉사활동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다문화 축제, 체육행사

<표 2-19> 주민자치회 다문화 어울림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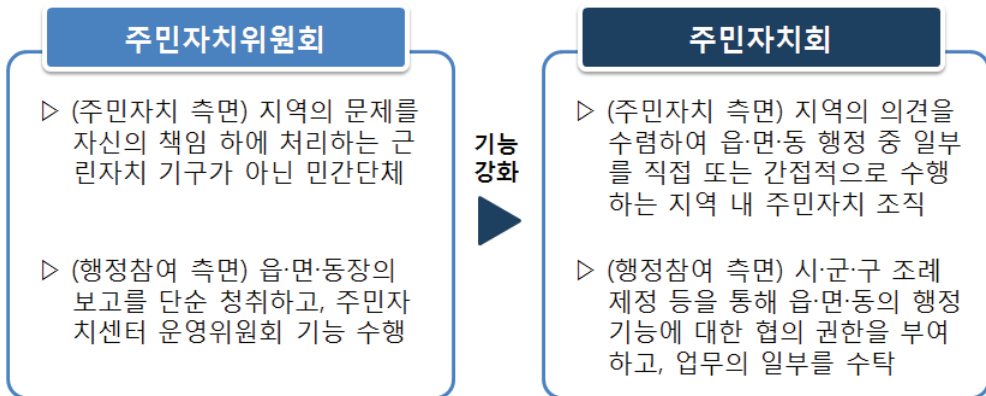
- ❖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 ‘다정행복사업단’
 - ▶ 먹거리라는 소재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 이주여성에게 일자리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에 저렴한 가격의 음식을 판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
- ❖ 광주 광산구 송정1동 ‘다문화 가정, 릴레이문화체험 및 기타밴드리스트’
 -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파스텔 공예 체험, 베트남 전통모자 만들기 및 전통 춤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
- ❖ 대전 노은1동 ‘다문화가정 전통한국음식 특강’
 - ▶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전통한국 음식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다문화가정의 식생활 개선과 가족관계 향상 도모

3. 주민자치회 지위와 기능

□ 기본방향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기존 읍면동 행정기능 중 고유 행정업무를 제외하고 주민자치회에 기능을 부여
 -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 행정중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내 주민자치조직
 - 시군구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을 부여하고 사무의 일부를 위탁

<그림 2-12>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기능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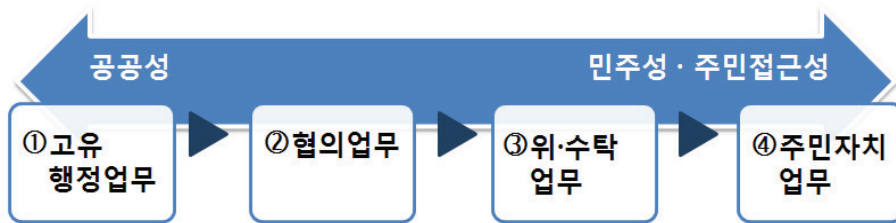
<표 2-20> 주민자치회의 기능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 읍면동 행정기능 및 주민자치회 기능

- 읍면동 행정기능은 공공성, 민주성 및 주민접근성을 기준으로 고유 행정업무, 협의업무, 위탁업무 등으로 구분하고, 고유 행정업무를 제외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자치회로 업무를 배분
 - 고유행정업무는 전국단위로 통일적으로 처리하거나 사회복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서, 주민자치회는 관여하지 않음

<그림 2-13> 주민자치회로 부여되는 업무



-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로 세분함
 - 협의업무는 읍면동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협의 권한을 부여
 - 위탁업무는 읍면동(또는 시군구) 사무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주민자치업무는 행정과 관련이 없는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의 주민자치회 업무

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세부내용

□ 시범실시 대상지역 선정

- 2013년 4월 10일 설명회를 거쳐 5월 7일까지 전국적 공모를 통하여 전국 3,487개 읍면동중 166개 지역에서 신청

-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민관합동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서면심사 및 인터뷰를 거쳐 6월에 31개 읍면동을 최종 선정

<표 2-2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최종선정지역

구분	대상지역		구분	대상지역	
1	서울 (2)	성동구 마장동	17	강원 (2)	고성군 간성읍
2		은평구 역촌동	18		인제군 인제읍
3	부산 (2)	연제구 연산1동	19	충북(1)	진천군 진천읍
4		동래구 안락2동	20	충남 (4)	천안시 원성1동
5	대구(1)	수성구 고산2동	21		논산시 벌곡면
6	인천(1)	연수구 연수2동	22		아산시 탕정면
7	광주 (3)	광산구 운남동	23		예산군 대흥면
8		북구 임동	24	전북 (2)	완주군 고산면
9		남구 봉선1동	25	군산시 옥산면	
10	대전(1)	동구 가양2동	26	전남 (2)	순천시 중앙동
11	울산(1)	북구 농소3동	27	경북(1)	목포시 신흥동
12	경기 (5)	수원시 행궁동	28		안동시 강남동
13		수원시 송죽동	29	경남 (2)	창원시 용지동
14		오산시 세마동	30	거창군 북산면	
15		부천시 송내1동	31	세종(1)	부강면
16		김포시 양촌읍			

시범실시 기간

○ (추진기간) 2013년 5월 ~ 2014년 7월

- 2013년 5월~2013년 7월말 : 사전준비기간
- 2013년 7월부터 일년간 진행

- **(고려사항)** 시범실시 지자체 선정, 시범실시 업무편람 작성, 조례 제·개정, 위원 위촉, 읍면동 행정기능에 대한 분석결과 협의·위탁사무 결정 등 사전준비 기간 및 위수탁 계약기간(1년 단위) 고려
 - 업무추진 진척도에 따라 2014년 지방선거일 이후까지 기간 연장

<표 2-2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 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자격요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지역 내 소재 사업장 및 단체에 근무하는 자
 - 단, 주민자치회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한사람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
- **(지위 및 정수)** 무보수 명예직(회의 참석 등에 따른 수당 지급 가능),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20~30명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
- **(선출 및 위촉)** 읍면동 단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및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 간 구성 비율을 결정 선출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 중에서 위촉(지역 여건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 가능)

<표 2-23> 주민자치회의 구성

<p>「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p> <p>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p> <p>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 주민자치위원 선출방식
 - 지역대표 선출(통·리장 중 추천), 일반주민 공개모집, 직능대표 공개 모집으로 구분하여 선출
- 주민자치회 운영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읍면동 자율적인 운영
 -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 **(정치적 중립)**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공직선거법」³⁾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위원이 선거 운동 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박탈 규정을 조례에 규정
 - 위원 선출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모집과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 선출

3)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하부기관 및 회의 운영)** 임원, 분과위원회 등 하부기관 구성과 회의 개최 요건, 의사정족수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함
 -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와 근린자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 파견, 유급 사무원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주민자치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단 지역 실정에 따라 유급 사무원을 두고 자체재원으로 보수 지급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따라 폐지 또는 승계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주요 정치일정('14년 지방선거) 및 해당 지자체 여건(기존 주민자치위원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 최소화

□ 시범실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시범실시기간 중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표 2-24> 주민자치회의 구성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행정적 지원)** 시범실시대상 지역의 행정적 지원
 - 제도변화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컨설팅 수행
 - 안전행정부 유관사업(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원 협조
 - 시범실시 우수기관(공무원) 선정 및 포상 실시

<표 2-25> 시범실시 우수기관(공무원) 선정 및 포상 계획('14년 하반기 추진)

대상	구분	비고
우수 기관 (10개 시군구)	대통령 표창 및 인센티브(3억원)	1개 기관
	국무총리 표창 및 인센티브(각 2억원)	3개 기관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및 인센티브(각 1억원)	6개 기관
우수 공무원 (20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3명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10명

- **(재정적 지원)** 시범실시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 지자체 동기부여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초기단계에서의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필요, 1개 지자체당 1억 원 정도(총 30억 원, 특별교부세 등)
 - 시범실시 완료 후('14년 하반기) 최종 결과 평가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표창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비 보조)

주민자치회의 재정 및 회계

- **(자체재원)** 주민자치회비,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수익사업 수입 등
 - 회비 징수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징수 여부 및 금액 등을 자율적 결정
- **(기타재원)**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 주민 또는 기업 기부금품 등

시범실시 결과평가

-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는 2차에 걸쳐 실시할 계획(중간평가, 최종평가)
 - (중간평가) 안전행정부가 시·도의 협조 아래 해당 시·군·구와 합동으로 중간평가를 실시
 - (최종평가) 개편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합동으로 실시

- 주요 평가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협의 대상 행정기능 및 위탁 대상 사무의 적절성,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개선·보완 필요사항, 유형별 차별화 방안 등
- 평가결과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시 평가결과 반영, 시범실시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특별교부세 지원) 등
- 자율적이고 점진적으로 주민자치회 전국 확산('15년 이후)

제3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분석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국 현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국 현황 개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 전국 3,487개 읍면동 중 166개 지역에서 신청하였으며 그중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을 비롯해 31개 읍면동을 최종 선정함
- 시범실시 최종선정지역은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유형중 안심마을형과 지역복지형을 기본모델로 선택하고 그 외의 유형(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은 자율적으로 선택
 - 안전행정부에서는 31개 읍면동 중 10개 지역을 안심마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함
 - 안심마을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광주 남구 봉선1동, 경기 수원시 송죽동, 강원 고성군 간성읍, 충북 진천군 진천읍, 충남 천안시 원성1동, 전남 순천시 중앙동, 경남 거창군 북산면이 선정됨

<표 2-2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최종선정지역

구분	대상지역		유형	구분	대상지역		유형
1	서울 (2)	성동구 마장동		17	강원 (2)	고성군 간성읍	안심마을형
2		은평구 역촌동	안심마을형	18		인제군 인제읍	
3	부산 (2)	연제구 연산1동	안심마을형	19	충북 (1)	진천군 진천읍	안심마을형
4		동래구 안락2동		20		천안시 원성1동	안심마을형
5	대구 (1)	수성구 고산2동		21	충남 (4)	논산시 벌곡면	
6	인천 (1)	연수구 연수2동		22		아산시 탕정면	
7	광주 (3)	광산구 운남동		23		예산군 대흥면	
8		북구 임동		24		완주군 고산면	
9		남구 봉선1동	안심마을형	25	군산시 옥산면		
10	대전 (1)	동구 가양2동		26	전남 (2)	순천시 중앙동	안심마을형
11	울산 (1)	북구 농소3동		27		목포시 신흥동	
12	경기 (5)	수원시 행궁동		28	경북 (1)	안동시 강남동	
13		수원시 송죽동	안심마을형	29	경남 (2)	창원시 용지동	
14		오산시 세마동		30		거창군 북산면	안심마을형
15		부천시 송내1동		31	세종 (1)	부강면	
16		김포시 양촌읍	안심마을형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선정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1-2개 지역으로서 읍면동의 인구, 면적, 도시화정도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선정함

- 동지역은 주거지역(6), 상업지역(4), 도농혼합지역(5)으로 읍면지역은
 균청소재지(5), 과대면적지역(3), 과소인구지역(3), 농어촌지역(6)으로
 유형화하되 통합여부, 일반구 설치 현황, 대동제 운영 여부 등을 고려
- 본 연구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주거지역과 주거·상업혼합지역, 도농혼
 합지역, 농어촌지역으로 세분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1개 읍면동 지역 중 경기 수원시 송죽동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을 제외하고 안심마을 시범사업 선정과 별개로 성공모델유
 형을 안심마을형을 선택함
- 또한 대구 수성구 고산2동, 광주 남구 봉선1동, 경기 수원시 행궁동, 강
 원 인제군 인제읍, 경남 거창군 북상면 등 5개 읍면동을 제외하고 26개
 읍면동에서 지역복지형을 선택함

<표 2-2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공모델 유형

순번	시도	지역명	활동계획
1	서울	은평구 역촌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2		성동구 마장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3	부산	연제구 연산1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평생교육형, 마을기업형
4		동래구 안락2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도심창조 및 평생교육형
5	대구	수성구 고산2동	안심마을형
6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평생교육형
7	광주	남구 봉선1동	안심마을형, 도심창조형
8		북구 임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도심창조형
9		광산구 운남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다문화어울림형
10	대전	동구 가양2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지역자원형
11	울산	북구 농소3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지역자원형
12	세종	부강면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지역자원형

순번	시도	지역명	활동계획
13	경기	수원시 행궁동	안심마을형
14		수원시 송죽동	지역복지형, 도심창조형
15		오산시 세마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도심창조형
16		부천시 송내1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17		김포시 양촌읍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18	강원	고성군 간성읍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19		인제군 인제읍	안심마을형
20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지역복지형, 평생교육형
21	충남	천안시 원성1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도심창조형
22		논산시 벌곡면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다문화어울림형, 마을기업+지역자원형
23		아산시 탕정면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지역자원형, 도심창조형
24		예산군 대흥면	안심마을형, 지역복지+마을기업형, 지역자원형
25	전북	완주군 고산면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평생교육형
26		군산시 옥산면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지역자원형
27	전남	순천시 중앙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도심창조+마을기업+평생교육+지역자원형
28		목포시 신흥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도심창조형
29	경북	안동시 강남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30	경남	창원시 용지동	안심마을형, 지역복지형, 도심창조형
31		거창군 북상면	안심마을형, 지역자원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 안전행정부(2013),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워크숍 자료」중 시범실시 대상지역별 주요 추진계획을 정리한 것임

안심마을형 현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1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마을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29개 읍면동임

- 안심마을형의 사업으로는 ① 생활안전, ② 교통안전, ③ 재난대비, ④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안전, ⑤ 마을환경정비, ⑥ 농작물 안전 ⑦ 기타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음
- **(생활안전)**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에 의한 생활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파출소, 학교, 자율방범대, 각종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 순찰 등의 방법활동과 등하교길 지도, 안심귀가 등을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광주 운남동과 울산 농소3동, 충남 천안시 원성1동, 전남 순천시 중앙동에서는 범죄예방 및 취약지역을 위한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에서는 등하교길 안전지도를 제작
 - 서울 역촌동에서는 안전교육(심폐소생술 교육, 어린이 안전보행 교육, 자전거 안전 교육)을 실시,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서는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 봉선1동에서는 전 주민 안전교육 이수를 시행하고 있음
- **(교통안전)**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으로는 대구 고산2동에서 교통방해 및 불편시설물 조사 및 정비, 교통안전 관련 지도 제작 및 계몽을 하고 있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과 인제군 인제읍에서는 등하교길 교통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재난대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에서는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안전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 방재력 강화를 위한 모델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 수성구 고산2동에서는 재난안심마을로서 화재 및 풍수해 대비 시설 조사 및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서는 주택화재 안전지킴이를 운영, 경기 수원시 행궁동에서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으로 화재 없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중에 있음

- **(청소년안전)** 많은 지역에서 마을안전 지킴이의 순찰과 캠페인 등을 통한 청소년 선도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광주 북구 임동에서는 주민 스스로 학교폭력 및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예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과 자율방범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수원시 행궁동에서는 명예 청소년 경찰을 운영함
- **(마을환경정비)** 마을의 안전위해요소 발굴 및 제거, 불법 광고물 제거, 주변환경개선, 상습불결지 환경정비, 불법우려지역 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과 전남 순천시 중앙동에서는 골목길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함
- **(농작업안전)** 대구 수성구 고산2동에서는 농작물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기타)** 광주 남구 봉선1동에서는 주민불편조사단과 5분 대기 안전활동가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복지형 현황

- 서울 은평구 역촌동과 강원 고성군 간성읍을 포함한 26개 읍면동에서 지역복지형을 선택함
- 지역복지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① 나눔활동, ② 방문활동, ③ 집수리 등의 환경개선, ④ 의료 및 재능기부, ⑤ 아동 돌봄센터 및 공부방 운영, ⑥ 나눔장터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재원 배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나눔활동)** 반찬, 사랑의 빵, 쌀, 김장 등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나눔 사업을 지역복지형을 선택한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음

- **(방문활동)**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수시 안부전화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돌봄
 -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는 홀몸 어르신 1:1:1(봉사자:직원:통장:독거노인) 안부 서비스를 추진함
 - 부산 연제구 연산1동과 광주 북구 임동에서는 독거노인 가정에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건강상태 확인하고 있음
 - 부산 동래구 안락2동에서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대상 매월 1회 가정방문 및 수시 안부 전화를 시행함
- **(집수리 등의 환경개선)** 독거노인과 저소득층등을 위한 집수리를 지원하여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돕고 있으며, 저소득가구를 위한 소독 및 청소사업 등을 통해 향상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 성동구 마장동과 광주 북구 임동에서는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음
 -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서는 지역 청소업체와 연계한 저소득가구 소독 및 청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의료 및 재능기부)**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및 재능기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 부천시 송내1동에서는 즐거운 문화 나들이, 어르신 무료 한방진료, 사랑의 경로 위안잔치 등 추진
 -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
 -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는 지역 내 요양시설, 독고노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 실시(말벗, 재롱잔치, 전통놀이, 떡 만들기, 인형극 등)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에서는 주민 주도의 재능 나눔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문화생활’, ‘용지동 재능나눔단(Probono)’ 구성·운영
- **(아동 돌봄센터 및 공부방 운영)**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돌봄센터와 공부방을 운영하고, 방과후 어린이를 위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음

-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보육 사각지대 아동 돌봄센터 및 취약 아동 공부방 운영 지원
- 전남 순천시 중앙동에서는 방과 후 어린이 휴게실 운영
- **(나눔장터 운영)** 저소득층을 돕는 다양한 복지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많은 읍면동에서 나눔장터 등을 운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전남 목포시 신흥동에서는 나눔장터(벼룩시장, 바자회, 직거래 장터 등) 운영
 -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은 틈새계층 돕기 위한 솔안말 벼룩시장을 운영하여 이익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을 돕기에 사용
 - 경기 부천시 송내1동에서는 이웃돕기 일일 찻집 운영
 - 그 외에도 경기 김포시 양촌읍, 강원 고성군 간성읍, 충남 아산시 탕정면 등에서 알뜰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지역복지형은 봉사를 위한 주민 혹은 주민조직, 단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경기 오산시 세마동에서는 종합적인 관리 네트워크 구축하고 복지지도 제작·관리하여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한 실무 추진단을 운영함으로써 빈틈없고 형평성 있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충남 천안시 원성1동 지역 맞춤형 주민공동체 봉사단 운영

마을기업형 현황

- 마을기업형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성동구 마장동, 부산 연제구 연산1동, 경기 김포시 양촌읍, 충남 논산시 벌곡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전남 순천시 중앙동, 경북 안동시 강남동 등 8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음
- 마을기업형은 지역 내 자원과 폐자원, 재활용 등을 활용해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표 2-28> 마을기업형 위한 활용내용

시도	지역명	마을기업형 활용내용
서울	은평구 역촌동	지역 내 폐자원 재생 사업
	성동구 마장동	자매결연지(농산물), 축산물시장과 연계
부산	연제구 연산1동	북 카페, 행복을 나르는 연1 공동 배달서비스 사업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한우를 이용한 대표상품 개발 및 판매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산 수락계곡을 활용
	예산군 대흥면	영농조합과 농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 장터
전남	순천시 중앙동	마을기업 「천태만상」창업(동네 부업)
경북	안동시 강남동	아나바다 장터로 운영

□ 도심창조형 현황

- 도심창조형은 부산 동래구 안락2동, 광주 남구 봉선1동과 북구 임동, 경기 오산시 세마동, 충남 아산시 탕정면, 전남 순천시 중앙동, 목포시 신흥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거창군 북상면 등 9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음
- 도심창조형은 마을과 주민의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29> 도심창조형을 위한 활용내용

시도	지역명	도심창조형 활용내용
부산	동래구 안락2동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벽화
광주	남구 봉선1동	지역의 전통시장
	북구 임동	흥물스러운 시장 건물(대원시장)을 문화·예술 및 청년 창업 거점 공간으로 재생

시도	지역명	도심창조형 활용내용
부산	동래구 안락2동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벽화
경기	오산시 세마동	마을마다 특색있고 고유문화를 가진 마을 조성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의 명물 포도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포도넝쿨 터널 조성)
전남	순천시 중앙동	동네 부엌, 창작 공간 제공(창조센터 천태만상) 운영
	목포시 신흥동	장미의 거리, 달맞이공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용지호수, 메타세콰이어 거리 등을 통한 힐링로드 조성
	거창군 북상면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북상 만들기

□ 지역자원형 현황

- 지역자원형은 대전 동구 가양2동, 울산 북구 농소3동, 세종 부강면, 경기 부천시 송내1동, 충남 논산시 벌곡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전북 군산시 옥산면, 전남 순천시 중앙동, 경남 거창군 북상면 등 10개 읍면동에서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역자원형은 지역명소, 특산물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충남 논산시 벌곡면과 전남 순천시 중앙동은 지역자원형과 마을 기업을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

<표 2-30> 지역자원형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내용

시도	지역명	지역자원 활용내용
대전	동구 가양2동	민속놀이(홍룡가마놀이 및 벚꽃축제)를 재연하는 행사를 지역축제로 승화 발전
울산	북구 농소3동	달천 철장·달천 편백산림욕장 관광 자원화, 전국 최대 부추 생산지로 부추 브랜드화
세종	부강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로컬푸드 사업 등)

시도	지역명	지역자원 활용내용
경기	부천시 송내1동	소사복숭아 축제
충남	논산시 별곡면	대둔산 수락계곡을 활용한 얼음 축제
	아산시 탕정면	목요장터
	예산군 대흥면	지역 자원 활용(대흥 동천, 봉수산 휴양림 등)
전북	군산시 옥산면	청암산구슬뿔 등산축제개최
전남	순천시 중앙동	동네 부업
경남	거창군 북상면	지역 브랜드화(거창하게 노래하는 농부들)

□ 평생교육형 현황

- 평생교육형은 부산 연제구 연산1동과 동래구 안락2동, 인천 연수구 연수2동, 경기 부천시 송내1동,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전북 완주군 고산면, 전남 순천시 중앙동, 경남 거창군 북상면 등 8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음
- 평생교육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실직자 교육, 성인 문화교육 등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수강생은 과정수료 후 2-3회 지역행사 시 자원봉사를 함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확보함
 - 또한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는 평생학습센터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1개 마을 단독형 또는 2~5개 마을 연계형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교육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부, 결혼이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실시

다문화 어울림형 현황

- 다문화 어울림형은 광주 광산구 운남동과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서 추진하고 있음
 -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서는 주민한마음 축제와 음악회 등의 사업을 추진
 -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서는 다문화인 가정 만남의 날 행사, 한글 교육, 학용품지원, 친정방문 항공비지원 등을 실시함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강원도 현황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강원도 현황 개요

- 강원도는 고성군 간성읍과 인제군 인제읍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
- 간성읍은 안심마을형 및 지역복지형을 모델로 선정
 - 지역 내 안전유해요소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관리하는 지역 안전네트워크 망의 구축과 탈선방지와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놀이문화 지원 사업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심체 역할수행
 -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복지소외계층의 복지재원 배분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 인제읍은 안심마을형 모델을 선택
 - 기존의 문화예술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관내 풍부한 안전관련 봉사단체와의 연대 협의를 통한 주민밀착 안심마을형 네트워크를 구축·확대

- 자연재난 예방활동과 교육을 통해 지역방재력 강화모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확산 유도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현황

- **(기본현황)**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은 인구 7,497명에 가구 수 3,360세대가 살고 있으며, 면적은 180.19km²임
 - 7호선과 46호선 동서 교통로의 요충지이며, 중부 동안형 기후로 산간 고랭지와 해안 평야지가 공존하는 곳임
- **(주민자치 시범실시의 필요성)** 노인인구가 전체 60%이상이고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전체 25%로 읍 주민센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중심의 안전네트워크망, 복지공동체 형성 등이 절실함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분석)** 주민자치위원회는 2002년 8월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2013년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5개 과정 10개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
 - 방과후교실(드림교실, 정보기술자격증반), 일반프로그램(색소폰, 통기타, 실용공예, 사진반), 특성화프로그램(고성군역사 바로알기, 저소득층 가구 소독 및 청소), 테마프로그램(주민과 함께하는 주말산행), 상시프로그램(건강증진, 헬스)
 -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프로젝트 사업 :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전통시장 활성화 작은음악회 개최,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저소득가구 소독 및 청소사업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주민자치회 실시기간 : 2013년 9월 - 2014년 6월

- **(주민자치회 조례제정)**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주민자치회는 2013년 6월 재정조례안 기본계획을 수립으로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주민자치회 조례를 2013년 9월에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음
- **(위원선정 및 위촉)**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읍장추천 3명, 이장단협의 회 추천 3명, 번영회 추천 3명)를 구성하여 지역대표위원, 주민대표, 직능 대표로 구분하여 2013년 9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구성함
 - 30명(주민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1명, 감사2명, 위원25명)
 - 지역대표위원(이장단협의회 추천), 주민대표 및 직능대표(공개모집)
-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일반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됨
 - 이에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개모집과 자격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구성하는 방안이 요구됨
- 주민자치회가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관계로 주민자치회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어 주민자치회 업무에 차질이 우려됨
 - 이에 주민자치회 유급간사가 요구되며,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함
 - 또한 읍면동과 주민자치회의 자체수익으로 유급간사의 인건비를 해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급간사를 위한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의 지원 혹은 수익사업 발굴 등의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여 자격 제한자를 제외하고 위촉 대상으로 추천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간의 관계를 설정

<표 2-3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현황

계	자영업	신문 서비스업	보험업	주부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복지 서비스업	전기업	회사원	농업
30	7	1	1	8	2	3	1	1	1	5

- (주민자치회 업무분석)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의 성공모형의 유형은 안심 마을형과 지역복지형을 선정함

<표 2-32>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주민자치회 업무분석

구분	유형	업무	
협의업무	안전 마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망 구성 지역 내 협오시설 주변 주민 의견수렴 군 시책 의견제출 교통신호 개선 등 	
	지역 복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숙원사업계획 지역자원 활용방안 지역 내 투자유치 계획 	
위탁업무	안전 마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놀이문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 후 교실 확대운영 학교 동아리방 활성화 지원 등
	지역 복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인 야간 프로그램 확대운영 주민들을 위한 실생활 프로그램 확대운영
주민자치업무	안전 마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안전네트워크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순찰대 운영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재설작업단, 산불감시단 운영
	지역 복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화합한마당 축제 저속특층가구 소독 및 청소사업 사랑의 김장나누기, 쌀나누기 사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이웃과 함께하는 알뜰장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 **(주민참여와 홍보, 교육)**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프로젝트 사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안전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해 지역안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 분과체계 효율화(자치, 문화, 복지분과)
 -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네트워크망 협약식 체결 등
- 교육, 워크숍,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됨
 - 또한 주민자치회 관련 매뉴얼의 부재로 인한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임
-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

<표 2-3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역할

구분	역할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의 등의 사업의 적극 지원 및 컨설팅 실시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및 위탁업무 수행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주민자치회 회계처리를 위한 관련 공무원 지원 •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시책 수립 시행 • 위탁업무와 재정분야에 대한 관련사항 보고지시 및 업무조사와 서류검사 실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홍보
간성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과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지원 • 사업운영 자문 및 주민자치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지원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홍보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협의, 위탁업무, 주민자치회 고유업무 처리 • 기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 강원도 고성군에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공무원이 존재하나, 타 행정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주민자치회를 위한 전담공무원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이에 주민자치회만을 위한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요구됨
- 주민자치회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하지 않음
 - 이에 향후 강원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의 활용이 요구되며, 강원발전연구원의 지원이 요구됨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현황

- **(기본현황)**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은 인구9,661명에 가구 수 3,990세대가 살고 있음
 - 동서관통 44호선 및 46호선, 31호선 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요충지로서 전국 최고의 모험 관광지임
 - 면적이 넓고 산과 강이 마을에 중심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재난관리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민자치 시범실시의 필요성)**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문화예술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관내 풍부한 안전 관련 봉사단체와의 연대 협의를 통한 주민밀착 안심마을형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상화된 이상기온에 대비한 자연재난 예방활동과 교육을 통해 지역방재력 강화모델을 개발·운영함으로 타 지역으로 확산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분석)**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주민자치회 실시기간 : 2013년 9월 ~ 2014년 6월
 - 인제군내 주민자치회 공모기간이 5일(2013년 4월 22일~4월 26일)로 매

우 짝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됨

- **(주민자치회 조례제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수립으로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주민자치회 조례를 2013년 11월에 공포함
- **(위원선정 및 위촉)**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읍장추천 3명, 이장단협의회 추천 3명, 번영회 추천 3명)를 구성하여 지역대표위원, 주민대표, 직능대표로 구분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며 주민자치회 구성을 추진중에 있음
 - 총 위원수는 25명(주민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1명, 감사2명, 위원20명)
 - 지역대표위원(이장단협의회 추천 5명), 주민대표(공개모집 10명), 직능대표(공개모집 10명)
-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일반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자치위원의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됨
 - 이에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을 공개모집과 자격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구성하는 방안이 요구됨
-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관계로 주민자치회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어 주민자치회 업무에 차질이 우려됨
 - 이에 주민자치회 유급간사가 요구되며,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함
 - 또한 읍면동과 주민자치회의 자체수익으로 유급간사의 인건비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급간사를 위한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의 지원 혹은 수익사업 발굴 등의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주민자치회 업무분석)**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의 성공모형의 유형은 안심 마을형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은 생활안전형사업과 재난안전형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표 2-3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주민자치회 업무분석

구분	업무
생활안전형사업	순찰대 구성 운영, 등하교길 교통안전 지도, 안전한 귀가활동 지원, 학교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공시설물(가로등, 맨홀 등) 상시 모니터링 등 ※ 인제군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안전지킴이, 위생협회, 자율방재단 등과 연계
재난안전형사업	지역 방재력 강화 모델 개발, 재난체험 교육 실시 / 지역 방재력 강화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로변 제초작업, 제설작업, 산불감시, 물놀이 예방 등 ※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 주관 교육 교재 보급 및 지역 방재력 강화 국민 운동 추진
각종통계조사	

- **(주민참여와 홍보, 교육)** 주민자치회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주민참여방법, 홍보, 교육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매우 절실히 요구됨
 - 또한 주민자치회 관련 매뉴얼의 부재로 인한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분과체계의 구성이 요구됨
-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 강원도 인제군에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공무원이 존재하나, 타 행정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주민자치회를 위한 전담공무원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이에 주민자치회만을 위한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요구됨

- 주민자치회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하지 않음
 - 이에 향후 강원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의 활용이 요구되며, 강원발전연구원의 지원이 요구됨

제3장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활용방안

제1절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개요

제2절 협의 업무

제3절 위탁업무

제4절 주민자치업무

제 3 장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활용방안

제1절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개요

□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은 기관유지사무, 민원사무, 일반행정업무, 타기관 협조사무로 구분함
 - 고유행정업무는 기관유지사무와 민원사무, 타기관 협조사무로서, 전국 단위로 통일적으로 처리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서, 주민자치회는 관여하지 않음
 - 일반행정업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위탁 혹은 협의사무로서 배분할 수 있음
- 읍면동 행정기능을 중기능으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1> 읍면동 행정업무

대기능 분류	중기능 분류	업무 구분
기관유지사무	예산, 경리, 물품 및 재산관리, 인사, 감사 및 복무관리 등	고유행정업무
민원사무	주민등록, 인감, 민원, 세정민원, 가족관계 등	고유행정업무
일반행정	전산통계, 시정, 관재, 주민자치, 새마을, 민방위, 인력동원, 소방, 국민기초,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의료급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영유아 복지, 청소년 복지, 기타복지, 지역사회복지, 보건, 환경관리, 청소, 시장관리, 농지, 농정, 양정, 전작·특작, 농기계, 축산, 산림, 교통행정, 자동차 관리, 도시행정, 건축, 재난관리, 개발행위, 도로관리 등	주민자치회에 협의 혹은 위탁 가능 업무
타기관 협조사무	입영통지서 송달, 선거 및 투표 관련 사무 등	고유행정업무

※ 안전행정부(2013),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워크숍 자료」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협의 혹은 위탁사무로서 배분할 수 있는 일반행정업무를 주요 단위사무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2> 읍면동 일반행정 주요 단위사무

중기능	단위사무	중기능	단위사무
시정	리, 반 등의 명칭 및 구역 조정 건의	농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주민상훈 추천		농비불법전용 지도단속
주민자치	문화강좌 운영 및 관리		농정
	문화강좌 강사관리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	
	주민교육 및 청소년 봉사활동	농어업 재해조사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산림	산불예방 및 진화
	마을 소식지 발간		산불예방감시원 운영
	마을 축제		임산물 생산량 조사
인력동원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교통행정	노상방치차량조사
소방	산불예방활동		교통량 조사
국민기초	사회취약계층(출소예정자 등) 실태조사		노상 주차장관리
아동복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생활 실태조사	도시행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아동급식 수요조사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아동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 가정대상자 변동 확인	재난관리	재난시설물 점검
지역사회복지	복지대상자 가구별 방문		재해 이재민 발생보고
환경관리	공중화장실 유지 및 관리	개발행위	주민숙원사업 결정
청소	불법투기방지 지도	도로관리	가로등 관리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지도	도로관리	도로변 제조관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계도		
	쓰레기 종량제 계도		

※ 안전행정부(2013),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워크숍 자료」

- 읍면동 일반행정 사무 중 공공성, 민주성 및 주민접근성을 기준으로 협의업무, 위탁업무 등으로 구분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업무를 배분
-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로 세분함
 - 협의업무는 읍면동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협의 권한을 부여
 - 위탁업무는 읍면동(또는 시군구) 사무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주민자치업무는 행정과 관련이 없는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의 주민자치회 업무

<표 3-3> 읍면동 및 주민자치회 기능 분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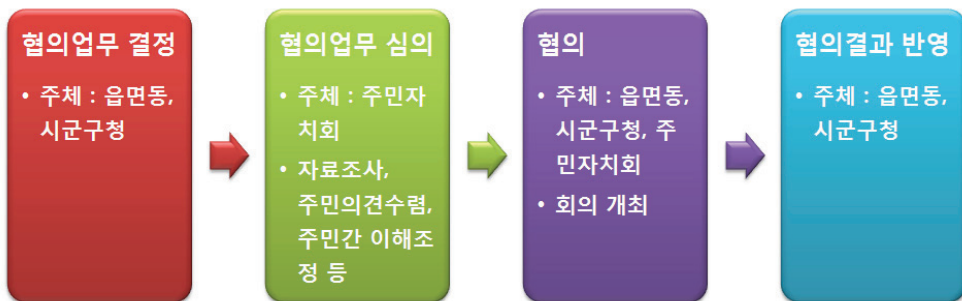
구분		내용	세부내용	주체
읍면동 행정기능	고유 행정 업무	전국단위로 통일적으로 처리하거나 사회복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유지사무 • 민원사무 • 일반행정 • 타기관 협조사무 등 	읍면동 기능
	협의 업무	읍면동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협의 권한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지역발전계획 • 주민간 이해조정 • 시군구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주민자치회 기능
	위탁 업무	읍면동(또는 시군구) 사무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운영 • 공공시설 운영 • 공공시설물 관리 등 	
주민자치업무	행정과 관련이 없는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의 주민자치회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활동(주민자치, 인문교양, 방과후 교육 등) • 각종행사(마을축제, 체육대회 등) •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제2절 협의 업무

1. 개요 및 추진계획

- 협의업무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반드시 지역의 실정과 현안문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자치실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음
- 협의업무를 통해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과의 협의와 의견제출, 조정 등의 단계가 요구되며,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시군구와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요구됨
- 협의업무의 추진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 주민자치회 협의업무 추진 흐름도



- 주민자치회에서 협의 업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내부의 회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을 제고해야 함

2. 세부내용

- 협의업무는 지역발전계획수립, 지역 내 투자유치계획 수립, 지역현안 조사 및 개선, 지역 내 행정에 대한 협의, 시군구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4> 주민자치회 협의업무 예시

내 용	
주민숙원사업계획	노후 시설물 개선, 마을환경 및 인프라 개선, 소하천정비, 농업기반시설, 하수도시설정비, 공원 정비, 보도정비, 마을 내 공동시설물 보수 및 개선, 노상주차 등 주차개선, 교통신호 개선 등
지역자원 활용 마을 만들기	각종 문화행사, 마을 특화거리조성 등
지역 내 투자유치계획 수립	
지역 내 행정에 대한 협의	지역 내 행정구역 변경계획, 혐오시설 주변 주민간 의견 수렴,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 리, 반 등의 명칭 및 구역 조정 건의, 주민불편 신고, 주민상훈 추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추천
시군구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은행체계, 공공시설물 조성(공원, 체육시설 등), 복지시책, 교통시책, 하천복원사업, 특화단지 조성 등

주민숙원사업계획

- 지역주민욕구와 주민의견 등의 지역현안조사를 통한 주민불편 시설개선으로 주민 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
-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역발전 도모
 - 지역 민원의 해결
 -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편의 증진

-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노후 시설물 개선, 마을환경 및 인프라 개선, 소하천 정비, 농업기반시설, 하수도시설정비, 공원 정비, 보도정비, 마을 내 공동 시설물 보수 및 개선, 노상주차 등 주차개선, 교통신호 개선 등이 있음

지역자원 활용 마을 만들기

-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
- 지역자원 활용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는 각종 문화행사, 마을 특화거리조성 등이 있음
-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사업과 연계 검토

지역 내 투자유치계획 수립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 내 기업 등의 투자 유치 계획을 수립
- 투자유치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역 내에 투자공간 및 인프라 구축
 - 시설의 개발과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나 환경의 개선(관련 조례개정 및 규칙제정)
 - 비교우위 정보의 제공과 투자 편익의 홍보(과세특례 및 규제완화, 예산 지원, 처리용자 지원, 지역인재 우선채용 보조금 지원, 중앙정부 부처와 연계한 지원 등)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투자의 촉진

□ 지역 내 행정에 대한 협의

- 지역 내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회와 행정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지역 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 지역 내 행정에 대한 내용으로는 지역 내 행정구역 변경계획, 혐오시설 주변 주민간 의견 수렴,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 리·반 등의 명칭 및 구역 조정 건의, 주민불편 신고, 주민상훈 추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추천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 내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음

□ 시군구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읍면동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구에 제출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으로는 공청회 개최, 주민총회, 주민간담회, 마을회의 등의 방법이 있음
- 시군구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의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운행체계, 공공시설물 조성(공원, 체육시설 등), 복지시책, 교통시책, 하천복원사업, 특화단지 조성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함

제3절 위탁업무

1. 개요 및 추진계획

- 위탁업무는 읍면동 행정사무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의 행정기능 수반 능력 검토 후 결정
-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읍면동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됨
-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업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내부의 회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총회, 주민간담회, 주민투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제고해야 함
- 아울러 위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을 고용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함

2. 세부내용

- 위탁업무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비롯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지역자원관리, 지역복지 관리, 안심·안전 관리, 주민공동체 관리, 지역생활관리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5> 주민자치회 위탁업무 예시

구분	세부내용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화강좌 운영(프로그램 운영, 수강생 모집 관리, 수강료 징수 및 집행, 강사 모집 및 관리 등)

구분	세부내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도서관, 문화의집, 여성회관 등의 운영 및 관리
	공중화장실, 공원 등의 관리
지역자원 관리	마을 휴양지 관리
지역복지 관리	취약계층(출소예정자,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가구, 위기가구) 실태조사 및 관리
안심안전 관리	가로등 관리
	산불예방활동
	산불예방 감시원 운영
지역생활 관리	노상방치 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노상 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 계도
	재활용 분리수거 실태 지도·점검 및 홍보
	쓰레기 종량제 계도

□ 주민자치센터 운영

○ 문화강좌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수강생 모집 관리, 수강료 징수 및 집행, 강사 모집 및 관리 등
- 지역주민의 수요와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의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바지
- 프로그램은 직장인 야간 프로그램, 주부들을 위한 실생활 프로그램, 방과후교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 마을정체성을 살리는 마을역사학,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일부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하고 수강생은 과정 수수료 후 2-3회 지역행사 시 자원봉사를 함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 확보효과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지역의 공공 시설물(작은 도서관, 문화의집, 여성회관)등의 운영 및 관리
 - 운영위원회 운영, 회원관리, 직원 채용, 프로그램 운영, 도서 등 물품 구입 등
- 지역의 공공 시설(공중화장실, 공원) 등의 유지 및 관리
 - 주민자치회의 공공시설 관리 등으로 청정하고 깨끗한 읍면동 구현

지역자원 관리

- 마을관리휴양지⁴⁾ 관리
 - 마을관리휴양지 위탁업무를 통한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의 기여, 지역자원보호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오염방지의 지속적인 계도
 - 마을관리휴양지 위탁업무를 통한 청소비와 시설이용료 등으로 휴양지 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

지역복지 관리

- 취약계층(출소예정자,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한부모가정, 소년 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가구, 위기가구) 실태조사 및 관리
 - 유기·학대 및 장기간 심층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가구 발생 미연의 방지, 서비스 연계 지원(긴급복지지원), 주기적 방문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 등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4) “마을관리휴양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의 실효성 제고
- 지역사회 복지자원 파악·연계·활용능력 제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내실화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업무와 연계
 - 관리대상
 -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 상실 가구 및 저소득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미혼부모, 개입이 필요한 조손 및 한부모가구, 소년소녀 가구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기능 회복 및 개선이 필요한 가구
 -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가구로 선별된 가구 등
 - 추진내용
 -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 복지대상자 발굴
 - 취약계층 방문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안전 안심 관리

- 가로등 관리
 - 지역 내 가로등 및 보안등,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및 순찰(주간, 야간)
 -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며, 가로등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
- 제설작업단 운영
 - 폭설로 인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설작업단을 위탁운영
 - 주요 간선도로 중심의 행정의 일률적인 제설작업에서 벗어나 이면도로 까지 제설작업

- 제설작업단의 상해보험에 가입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 “내 집앞 눈 치우기 조례” 재정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

○ 산불예방 감시단 운영

- 산불예방 감시단 운영을 통한 산불예방과 산불피해 최소화, 산림보호, 산불예방의식 고취
- 추진업무
 - 마을의 지형 및 산불위험 요인 파악
 -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 산불취약 지역(산림연접지역) 내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 등 산불 원인 감소를 위한 순찰 및 계도, 신고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혹은 화기인화물질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계도 및 신고
 - 산불예방모자, 리본 등을 착용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
 - 산불 발생 시 시군 및 읍면동에 즉시 전화로 신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 지역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과 연계

□ 지역생활 관리

○ 노상방치 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교통소통방해, 안전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상방치 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 신고대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노상 주차장 관리
 - 주차장의 시설 유지 및 관리 운영
 - 주차관리에 필요한 주차관리원을 확보하고, 명찰을 패용
- 불법주정차 계도
 - 불법주정차 계도 활동을 통한 도로교통체증의 감소,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
 - 추진업무
 - 교통량이 많은 상습교통정체지역에 고정배치 불법주정차 계도
 - 불법주정차 예방 캠페인 및 홍보
- 재활용 분리수거 실태 지도·점검 및 홍보
 - 다중이용시설 및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활용분리수거 실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
 - 점검사항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 장소·용기 확보의 적정성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보관·운반의 적정성
 -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합배출 여부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안내·계도 실시 여부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계도 및 홍보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계도, 교육 등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종량제 정착, 주민 인식전환 유도
 - 추진업무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와 교육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홍보(캠페인)와 계도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계도 및 홍보의 방법으로는 캠페인, 서명운동, 전단배포, 포스터 배부, 현수막 부착 등이 있음

제4절 주민자치업무

1. 개요 및 추진계획

- 읍면동 행정기능과 관련이 없는 주민자치회 고유업무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실현 가능 업무
- 협의 업무의 추진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3-2>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업무 추진 흐름도



2. 세부내용

<표 3-6>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업무 예시

구분	세부내용
문화 교육 분야	근린포럼 운영 및 교육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관리	지역 자원 조사 및 관리
	자원봉사 활동 관리
지역복지 분야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구 관리

구분	세부내용
지역복지 분야	저소득층 및 늑거노인 사랑의 나눔 활동(김장, 쌀, 반찬, 우유 등)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마을 상담소 운영
	아동돌봄센터 및 공부방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안심안전 분야	지역순찰대 운영
	등하교길 교통지도 및 안전귀가 활동
	제설작업단
	산불감시단
	마을 위해요소 조사 및 감시단 운영
	마을 안전 지도만들기
	안전마을 환경정비
	안전표준 매뉴얼 제작 보급
	마을안심안전센터 운영
	재난 체험 프로그램
	안전교실 운영
폐지 수집노인 안전조끼 제작 보급	
주민공동체 분야	마을축제
	마을회의
	주민교육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스토리북 발간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농촌 일손 돕기
	김장담그기 체험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역생활 분야	마을 청결 활동
	마을 가꾸기 활동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자전거 정기 무료점검, 캠페인 활동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
	소규모 재생사업
지역경제소득 분야	장터운영(지역 특산물 등 직거래 장터)
	물물교환 및 재활용 장터
	유흥지를 이용한 텃밭 등 운영
	마을카페 운영
	마을기업 발굴 및 운영, 지원
	마을기금 조성(일일 호프, 일일 커피숍)

문화 교육 분야

- 근린포럼 운영 및 교육
 - 읍면동 하위 단위에 주기별 또는 순환방식으로 근린 포럼을 주관함
 - 주민자치회, 주민공동체,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지원
 - 중고교 동아리방 활성화 지원
 -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관리

- 지역자원 조사 및 관리
 - 지역 내 자원의 총량 파악과 관리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함으로써 비효율과 낭비 제거

- 지역의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시설 등) 조사

○ 자원봉사 활동 관리

- 주민자치회의 업무에 있어 자원봉사자는 주민참여의 방법이며, 그러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요소
 - 자원봉사 업무설계
 -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자 배치 및 업무부여
 -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 자원봉사자 지도 감독 및 평가
 - 자원봉사자 인정과 보상
- 자원봉사자는 일반 자원봉사와 재능나눔형 자원봉사⁵⁾로 구분
-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시스템이 구축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원봉사 인력풀 혹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 지역복지 분야

○ 저소득층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 관리

-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화, 소독 및 청소 활동, 가스 및 전기 점검, 목욕 및 빨래 봉사 등 제공함으로써 복지배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 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복지욕구 파악,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5) 재능나눔형 자원봉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나 숙련된 경험자들이 자신의 지식, 노하우, 경험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수요기관,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재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 운영기간 : 연중 월 1회 혹은 주 1회
- 운영방법 :
 - 자원봉사자가 안부전화를 통한 안부와 건강 확인
 - 자원봉사자 그룹이 방문하여 소독 및 청소 활동, 가스 및 전기 점검, 목욕 및 빨래 봉사 등 제공을 통한 안부와 건강 확인
- 저소득층 가구 및 독거노인 사랑의 나눔 활동
 - 독거노인 등의 복지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김장, 쌀, 반찬, 우유, 빵 등의 나눔 활동 전개
 -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지원, 나눔 활동을 통한 안부 및 건강 확인
- 불우이웃돕기 등 성금 모금
 - 각종 캠페인 및 모금 창구 운영, 지역행사와 연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 모금된 재원은 어려운 이웃에게 공정하게 지원한 뒤 주민에게 공개
- 마을 상담소 운영
 - 범죄 및 폭력, 심신미약 등으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개별 심리 지원을 통한 사회적 관계 회복과 보호
 - 대상 :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성폭력, 마약, 가정폭력, 심신미약 등
 - 추진내용 :
 - 개별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병행
 - 상담을 통한 전문상담 지원센터 혹은 재활센터, 신경정신과 등 연계
- 아동돌봄센터 및 공부방 운영
 - 보육 사각지대 혹은 저소득층, 방임 아동을 위한 돌봄센터와 공부방을 운영하여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
 - 추진내용 :
 - 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돌봄센터와 공부방을 운영

- 방과후 어린이를 위한 휴게실 운영

○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향상과 생계안정, 사회공헌, 근로의욕 고취, 사회적 비용절감,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
-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산불예방 감시단, 불법주정차 계도, 마을환경정비, 독거노인관리, 등하교길 교통지도 등이 있으며, 추진하는 위탁업무 혹은 주민자치업무 등에서 노인맞춤형 일자리를 창출제공

□ 안심안전 분야

○ 지역순찰대 운영

- 범죄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야간 순찰 활동을 전개함으로 자발적인 생활안전 강화
-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및 계도
- 치안센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장단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학교, 파출소 등과 연계

<표 3-7> 지역순찰 운영방침

< 지역순찰 운영방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폼, 완장, 안내봉, 순찰중 안내판 등으로 순찰표시 • 미소순찰, 주민과 인사 및 말걸기 • 주간 및 야간 순찰 정례화 • 순찰일지 작성 • 순찰후 간담회 • 지역경찰 및 안전관련 유관기관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합동순찰 점검 • 자원봉사 제도보험 도입

○ 등하교길 교통지도 및 안전귀가 활동

- 주민이 참여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약자를 보호

- 교통법규 준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교통지도 등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 학부모, 치안센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장단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학교, 파출소 등과 연계
- 제설작업단 운영
 - 폭설로 인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설작업단을 위탁운영
 - 주요 간선도로 중심의 행정의 일률적인 제설작업에서 벗어나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
 - 제설작업단의 상해보험에 가입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 “내 집앞 눈 치우기 조례” 재정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
- 산불예방 감시단 운영
 - 산불예방 감시단 운영을 통한 산불예방과 산불피해 최소화, 산림보호, 산불예방의식 고취
 - 추진업무
 - 마을의 지형 및 산불위험 요인 파악
 -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 산불취약 지역(산림연접지역) 내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 등 산불 원인 감소를 위한 순찰 및 계도, 신고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혹은 화기인화물질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계도 및 신고
 - 산불예방모자, 리본 등을 착용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
 - 산불 발생 시 시군 및 읍면동에 즉시 전화로 신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 지역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과 연계

- 마을 위해요소 조사 및 감시단 운영
 - 마을 내 위해요소 조사단을 운영하여, 재해 혹은 범죄, 교통, 안전 등의 취약요인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항시 운영
 - 재해(화재, 수해, 산사태 등), 교통(교통신호, 교통방해, 불편 시설물 등), 범죄(우범지역, cctv사각지대, 빈집, 공사장 등), 안전(붕괴 위험지역 및 도로, 건물 등)
- 마을 안전 지도만들기
 -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 마을 안전지도를 작성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위해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통해 안전의식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안전 위해요소 : 우범지역, 사고 및 재해 취약지역, 공사현장, 교통사고 다발지역, 침수취약지역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방법 수록

<표 3-8> 마을안전지도 작성원칙

<p>< 마을안전지도 작성원칙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인(Hazards)과 마을의 자원(Resources)에 대한 파악 • 취약성(Vulnerability)의 파악 - 주민생활 경로 파악 및 위해요인 노출도 • 시뮬레이션(Simulation) - 도상훈련(圖上訓練)과 상상(Imagination) • 현장답사를 통한 정보확인 및 수정을 통한 완성

- 안전 표준 매뉴얼 제작 보급
 - 생활, 재난, 화재, 범죄, 교통 등의 분야에 대한 안전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 제공과 예방효과
- 안전마을 환경정비
 -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환경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재해 위험지역 정비 등 마을의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안전 확보와 예방 효과

<표 3-9> 안전마을 환경정비

구분	내용
재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 발생 후 마을 청소하기 • 상습 취약 하수관거 정비, 산사태 낙석방지시설 정비 등
화재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안전점검
범죄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포스트(전신주, 가로등 등)별 CCTV 혹은 블랙박스, 비상전화, 연락수단 설치 • 골목길 반사경 및 보안등 설치 • 골목길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 정비사업지역(재개발), 빈집, 공사장 등 취약지역 점검 등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자동차, 자전거 등)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 점검 • 교통안전 시설 확충(반사경, 도로구조 개선, 위험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위험구간 개선) 등

○ 마을안심안전센터 운영

- 생활, 교통, 화재, 범죄 등의 마을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안전 활동을 위한 주민과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모임공간으로서 안전 활동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등의 비치와 공유
-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실 역할
- 마을의 안전과 안심정보를 공유하고 마을안전지도 및 안전 표준 매뉴얼 보급 및 구비

○ 재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재난(화재, 산사태, 수해 등)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호하기 위한 현장위주의 재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재난 대비 훈련

○ 안전교실 운영

-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분하여 추진하되 현장위주의 체험식 안전교실을 운영

- 안전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문화 생활화에 기여

<표 3-10> 안전교실 대상 및 프로그램

구분	내용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초등학교, 중고생, 일반주민 등으로 분류
프로그램	가정 안전교육, 재난 안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교육, 교통보행 안전교육, 심폐소생술교육 ⁶⁾ , 응급구조교육, 생활안전교육, 재난대처요령교육, 자전거 안전교육

○ 폐지 등의 수집 노인 안전조끼 제작 보급

- 폐지 등의 수집 노인 등에게 눈에 잘 띄는 안전조끼를 보급 착용하게 함으로 안전을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폐지 등의 수집 노인 전수조사후 안전조끼 제작보급 : 가시성이 높은 색상 및 야광 기능을 추가하여 안전성 확보

□ 주민공동체 분야

○ 마을축제

- 지역명소, 특산물 등의 지역 자원의 활용한 마을 축제 혹은 테마가 있는 마을 축제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복리 증진
- 주민주도의 문화행사 개최로 주민참여도 제고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 마을축제로는 신년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행사, 어버이날행사, 정기 음악회, 정기마을축제 등이 있음

6) 심폐소생술 교육 : 갑작스러운 심폐정지(원인에 관계없이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는 일련의 상태)의 실제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

- 마을회의
 - 지역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마을소식을 공유하고,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지역주민의 요구와 현안을 조사할 수 있음
 - 주 1회 혹은 월 1회 단위로 마을회의의 개최 계획을 홍보하여 일반주민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화합의 계기 조성
- 주민교육
 - 지역 역사 바로알기, 주민자치회 기본 교육
- 마을소식지 발간
 - 주민자치회 활동사항, 마을 이야기, 마을 유무형 문화자원, 마을 미담사례, 마을 행사 및 경조사 소개
- 마을스토리북 발간
 - 마을 지도, 마을 이야기, 전래, 역사, 마을 유·무형 문화자원, 명소, 자랑거리, 마을 시설과 기관 등을 수록
 - 마을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마을 알리기 자료로 활용
-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 농촌 일손 돕기
 - 자원봉사자와 다문화인 등을 중심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한 마을 주민 교류의 장
- 김장담그기 체험사업
 - 김장담그기 체험사업을 통한 우리 김장담그기 문화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
 - 다문화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국내문화를 습득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김장담그기 체험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독거노인과 복지 취약계층에게 나눔

□ 지역생활 분야

- 마을 청결 활동
 - 마을 내 주 1회 환경정화 봉사 활동
 - 마을의 전 주민의 참여유도
- 마을 가꾸기 활동
 - 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마을화단심기, 벽화작업 등을 통한 마을의 미관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 마을 조성
-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자전거 정기 무료점검, 캠페인 활동
 - 자전거 도로 정비로 자전거 타기 좋은 안전한 자전거 마을 조성
 - 자전거 정기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자전거를 통한 생활 밀착형 자전거 유도
 - 자전거 문화조성 캠페인 활동으로 자전거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
 - 유희지 혹은 공사자재 및 폐기물, 폐차량 등으로 폐공간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휴식공간 조성
 - 지역 내 가능한 공간에 의자와 정자 등을 설치하여 주민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
 - 마을 공동체 휴식공간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범죄예방 효과
- 소규모 재생사업
 - 마을과 주민의 특성을 살려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브랜드 가치 제고
 - 소규모 재생사업은 거리 벽화전시, 마을 스토리 거리 조성, 마을 역사관 건립 등이 있음

□ 지역경제 소득사업 분야

○ 장터 운영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의 직거래 장터 운영
- 마을축제와 연계
- 수익금은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복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역복지 분야 사업 지원

○ 물물교환 및 재활용 장터

- 의류, 장난감, 폐금속, 폐가구 등의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과 생필품 교환 및 판매를 통한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및 환경교육의 장 마련
- 각종 부대행사를 통한 주민참여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개최주기 : 년 2회 등 정기적인 개최 또는 마을축제와 연계 개최
- 부대행사
 - 재활용장터
 - 물물교환
 - 개인자율 판매대 운영
 - 다양한 녹색체험 행사
 - 우산 및 자전거 등의 무료수리행사
 - 폐휴대폰, 헌혈증 기부행사
 - 마을축제 연계
- 수익금은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복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역복지 분야 사업 지원

○ 유희지를 이용한 텃밭 등 운영

- 지역 내 유희지를 이용한 텃밭을 가꾸어 수익창출(상추, 포도 등)
- 주민참여형 텃밭 운영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기여

- 수익금은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복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역복지 분야 사업으로 지원
- 마을카페 운영
 - 마을 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과 일자리 제공
 - 마을 카페 운영을 통한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서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청소년의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 탈선방지 및 청소년 공간 확대 효과
 - 수익금은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복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역복지 분야 사업 지원
- 마을기업 발굴 및 운영
- 마을기금 조성 운영
 - 일일 호프, 일일 커피숍
 - 수익금은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복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역복지 분야 사업 지원

제4장

주민자치회 지원방안

제1절 중앙정부의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지원책

제3절 주민과 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제 4 장

주민자치회 지원방안

제1절 중앙정부의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1. 공무원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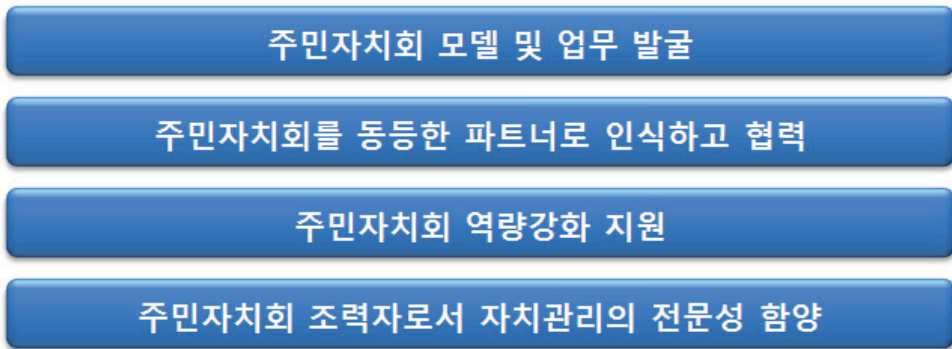
- 주민자치회가 시행되고 마을공동체가 실현되는 현 시대에서 행정은 주민 자치의 실현과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시민욕구가 다양해지고 행정의 수요와 질이 높아지면서 공무원의 인식제고와 함께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한 공무원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주민자치회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 주민자치회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적 특성과 지역현황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모델 및 업무를 발굴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 둘째, 주민자치회가 행정 하부기관인 행정기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협력해야 함
 - 셋째, 행정주도적인 주민자치회가 아닌 지역주민들을 중심에 두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넷째, 주민자치회의 조력자로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주민이 주인이라는 공공성에 기반하여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치관리의 전문성을 함양해야 함

<그림 4-1> 주민자치회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 주민자치회를 위한 공무원의 역량강화 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인식제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기적인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 요구되며, 우수사례지역의 벤치마킹을 위한 답사·연수 등을 지원해야 함

2. 주민자치회 매뉴얼 개발

- 개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상당수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자치회 관련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의 실무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주민자치회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 매뉴얼은 주민자치위원의 체계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자치회를 발전·안착시키고 운영하는데 안내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 할 것임

□ 주민자치회 매뉴얼 내용

- 주민자치회 매뉴얼에는 주민자치의 개념과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체계적인 실태연구를 통한 단계별로 실천 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표 4-1> 주민자치회 매뉴얼

< 주민자치회 매뉴얼의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의 개념 •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방법(회의진행방법, 공문 등 행정서류 작성방법, 예산 의결, 집행 방법 등) • 주민자치회 운영 단계별 실행전략 • 주민자치회 업무의 예시 •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및 성공모델 • 주민자치회 관련 법규 등

3. 주민자치회 관련 인센티브

□ 개요

-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 경비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안착될 때까지는 운영 경비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주민자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초기 사업경비의 지원 혹은 인센티브를 제안함

주민자치회 관련 인센티브 방안

- 주민자치회 인센티브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우수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둘째,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마음 놓고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4.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제정 추진

개요

-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활동, 지위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요구됨
 - 이는 향후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안착되고 확산되어 시행함에 있어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자치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주민자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내용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 후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한 입법사항을 도출해야 함

5. 주민자치 전문 인력양성

□ 개요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위한 모델을 기획하고, 관련 최신 선진기법이나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전문 연구 인력은 주민자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시점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함
- 하지만 국내 마을만들기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자치를 위한 전문인력 과정 등의 교육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주민자치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가나 전문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력교육과 인력양성에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요구됨

□ 주민자치 전문 인력양성 방안

- 주민자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 첫째, 주민자치 전문 기능사 등의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여, 주민자치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음
 - 둘째, 주민자치 전문가 과정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인력으로서 자격을 부여함
 - 셋째,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일정기간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주민자치 인턴과정을 거치게 한 후 특정지역의 주민자치의 임무를 부여하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음

□ 주민자치 전문 인력 활용 방안

- 이러한 전문인력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민자치회 지원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에서도 주민자치회관련 전문가를 전문직으로 채용하도록 함
 - 또한 그렇게 양성된 전문인력은 지역 내 주민자치회 활동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자치 전문인력은 지역 내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평가하고 조언할 수 있으며,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지원책

1.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화 및 대표성 확보

개요

-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민자치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보완해야 함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지역유지나 각종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명예직으로 여겨 자신의 여유시간이 생길 때만 소극적으로 주민자치 사업이나 활동에 관여함
 - 또한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실질적인 주민 자치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움

주민자치위원 구성시 고려사항

-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첫째,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신뢰와 영향력을 갖춘 자
 - 둘째, 지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할 의지와 자세를 가진 자
 - 셋째,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 생활법률, 의료, 교육, 문화, 언론,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 주민자치회의 구성의 다양화와 대표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전문성을 함양한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이를 배경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강사가 되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주민자치회 전담 부서 설치

개요

- 주민자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가 요구됨
 -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주민자치를 위한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타 업무와 병행하여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주민자치업무 전담부서의 역할

- 주민자치업무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 둘째, 주민간 혹은 행정과 주민간의 갈등시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음

3.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개요

-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중인 읍면동 중 일부에서 사업을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

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자치회가 정착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제고가 절실함

-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주민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게는 지역주민으로서 정주성과 정체성의 회복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안함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으로는 전문가 과정, 찾아가는 교육과정, 박람회 등
 - 이러한 교육을 일회성이나 단발성 세미나, 워크숍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향해야 함

□ 주민자치 역량강화 방법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과정
 - 설치단위 : 각 시군구별
 - 교육기간 : 3개월
 - 교육대상 : 주민자치위원, 일반주민
 - 교육내용
 - 주민자치의 개념·필요성
 -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역할
 -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방법
 -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

- 교육기관 : 시군구 내부·외부기관 위탁(평생교육센터, 전문연구기관, 학회, 중간지원조직 등)
- 찾아가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 교육대상 : 마을회관, 이장회의, 유관기관 단체 회의, 동호회 모임, 주부대학, 노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를 제공
 - 교육내용
 - 주민자치의 개념, 필요성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교육기관 : 시군구, 외부기관 위탁(중간지원조직, 전문연구기관 등)
-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 설치단위 : 시도
 - 기간 : 년 1회
 - 내용 :
 - 우수강사 초청 특강
 -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
 - 주민자치의 개념, 필요성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참여기관 : 주민자치회 관련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문연구기관, 중간지원조직, 학회 등

4. 주민자치회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개요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주민 자치에 대한 이해와 자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요구됨

-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하고 전문성을 더하며, 사업의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⁷⁾ 과정 등을 지원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으로는 기존의 마을지원센터나 강원발전연구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는 주민자치회 지원센터(가칭)등을 설립하여 주민자치회 신청 초기단계부터 컨설팅은 물론 업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지원센터의 역할

- 주민자치회 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주민자치회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 연구, 모니터링
 -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재정 지원
 - 주민자치 교육, 연수, 컨설팅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
 -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상담, 교육, 컨설팅
 -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 모델발굴
 -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외부 네트워크 구축 지원(행정, 단체, 조직 등)
 - 지역자원의 조사와 연구를 통한 주민자치회의 자원연계와 사업의 연합, 연대 지원

7)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 그룹의 협력을 이끌어 가는 다양한 회의와 워크숍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설계와 실행을 총괄하는 중립적이고 촉진적인 활동으로 이와 관련된 Skill들을 잘 이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을 Facilitator라고 함

5.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 개요

-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시군구의 조례는 주민자치회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므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조례를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작성하여 지역별 특성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획일화 되어 있음
- 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를 재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대표, 마을 관계자 등이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과 함께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재정시 고려사항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대한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차별화와 시도 혹은 시군구의 구체적인 지원 등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첫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다른 시군구와 차별화되는 주민자치의 방향을 명시
 - 둘째, 시도 혹은 시군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의 유형과 범위, 지원내용 등을 명시하고 지원예산의 근거조항 마련
 - 셋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와 관련 용어나 명칭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 넷째, 시도 혹은 시군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활

- 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계획, 주민자치위원 등의 역량 강화교육을 수립하는데 법적인 근거 제공
- 다섯째,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과 지위 명시

6. 주민자치회 평가체계 구축

개요

-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 추진상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드백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와 더불어 주민자치회 기능의 수요조사와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의 평가를 통해 피드백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향상된 주민자치회로 발전시킬 것으로 판단됨

주민자치회 평가체계를 위한 내용

-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할 것임
 - 주민의 욕구의 반영여부
 - 사업의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 주민,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여부
 - 타부문의 파급효과와 후속사업의 연계
 - 주민과 공동체의 체감정도 및 만족도
 - 사업의 활성화 정도
- 주민자치회 평가체계는 주민과 주민자치회 위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초 지방자치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의 각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

- 연 1회 실시하여 평가한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자치회에 내용을 전달하여 반영하도록 함

제3절 주민과 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1.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개요

-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아파트 주민대표자회의, 부녀회, 영농회, 직능단체, NGO, 시민단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학교, 파출소, 학교, 성당, 종교조직, 민간기관, 문화체육시설, 복지단체 등
- 지역 내·외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주민자치회와 지역주민은 주민자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된 단체들은 그들의 자원(인적·물적)을 공유하고 연계협력 및 공동 활동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에서 단체 및 조직의 다양한 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역할 분담 및 구성원을 자원봉사 참여로 유도할 수 있음
-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현안이 돌출될 때 연결망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공개토론, 정기적인 실무회의 등을 마련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
- 또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도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하나의 방법으로 요구됨

-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조사 및 관리는 주민자치 업무로 분류하여 수행할 수 있음

2. 주민참여와 자원봉사자 활성화

□ 개요

-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주민참여는 자원봉사의 형태로서 나타남
 - 주민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할 마음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여건 조성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주민이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와 자원봉사자 활성화 방법

- 주민참여와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민간담회, 현장체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 둘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주민자치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의식 제고를 통한 주민참여 의식을 높임
 - 셋째, 조직이나 집단 단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의 자원봉사로 참여 시 조직과 단체에 행사를 후원하는 등의 지원
 -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수강생은 과정 수료 후 2~3회 지역행사 시 자원봉사를 함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 확보

- 다섯째, 지역의 음식점, 마트, 가게 등과 주민자치협력업소를 지정하여 주민자치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일정비율 할인혜택을 제공
 - 여섯째,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를 활용
 - 일곱번째,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안심하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 일회성 봉사로 끝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들의 종류, 수요, 단체별로 필요한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작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3. 운영재원의 확보방안

개요

- 주민자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조직임
- 이에 주민자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자치적인 활동을 위한 자주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요구됨

주민자치회 운영재원 확보방안

- 주민자치회의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특별지원기금, 주민자치회 수익사업 수입, 행정업무 위탁업무 수입, 시도 혹은 시군구 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 주민자치회 운영 보조금, 임대수입, 수강료, 주민자치 기금조성, 기부금, 특정 지방세에 대한 부가세 징수 등이 있음

<표 4-2> 주민자치회 자원 확보방안

재원	내용
특별지원기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기간 중 중앙정부의 지원금
수익사업	지역축제, 바자회, 체육대회, 장터운영, 재활용장터, 마을기업, 마을카페 등의 주민자치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
위탁업무수입	읍면동 위탁업무에 대한 수입
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	주민자치업무를 시도 혹은 시군구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하여 보조금을 받음
주민자치회 운영 보조금	시도 혹은 시군구,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운영 보조금
임대수입	지방자치단체와 각종시설 운영관리 계약
수강료	각종 강습회
주민자치 기금조성	일일 찻집, 일일 호프, 그 외 마을기금조성
기부금	지역 유지, 자원봉사자의 기부
특정 지방세에 대한 부가세 징수	특정 지방세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하여 주민자치회에 배정

-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을 의결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철저한 회계관리 및 책임과 함께,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자치회 감사위원회(가칭)를 도입하여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회계를 실시해야 함
- 주민자치회 감사위원회 : 일반주민대표, 읍면동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년 1회 혹은 분기별 감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 공개함

4.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 개요

-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주민참여형 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현안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사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성화 사업, 지역경제 수익사업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주민참여형 사업의 내용

- 지역 맞춤형 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현안을 고려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가장 절실하게 지역에 바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로 인해 주민참여가 높아지고 주민차지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복지, 지역환경정비, 지역안전 등이 있음
 - 지역복지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목표로 모든 지역주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음
 - 지역환경정비는 주민의 삶의 터전을 향상시킴으로서 살기 좋은 마을로 재생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수 있음
 - 지역안전은 삶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용이함
-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주민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지역은 고유한 지역문화가 존재하며, 지역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됨

- 이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의 추진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됨
- 지역경제 수익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창출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므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 축제, 마을소식지 발간 등이 있음

5. 주민의견 수렴

개요

- 주민자치의 실현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으로는 주민총회, 주민투표, 주민간담회, 마을회의 등이 있음
- 이러한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 더불어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주민의견 수렴 방법

- 주민총회
 -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년에 1회 개최하며, 주민자치위원의 1년간의 활동결과와 차기년도 계획을 주민들에게 보고
- 주민투표
- 주민간담회

-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의 장

○ 마을회의

- 지역에 관심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마을 회의를 개최
- 정기적인 마을 회의를 통한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현안을 조사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제5장

결론



제 5 장

결 론

□ 주민자치회 개요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4항1에 의거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행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한 성공모델 창출 및 개별 법률제정 등으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과 점진적인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강원도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시범실시 이후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주민자치회를 위한 긴급 교육과 컨설팅 요구에 대응하며,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함
- 이에 주민자치 개념과 읍면동 현황분석,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분석, 강원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분석 등을 통해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함

□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활용방안

- 주민자치회 수행업무는 읍면동 일반행정 사무 중 공공성, 민주성 및 주민접근성을 기준으로 협의업무, 위탁업무로 구분하여 배분하며, 행정과 관련없는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가 있음
- **(협의업무)** 협의업무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업무로서 지역의 실정과 현안문제 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 협의업무로는 ① 주민숙원사업계획, ② 지역자원 활용 마을만들기, ③ 지역 내 투자유치계획 수립, ④ 지역 내 행정에 대한 협의, ⑤ 시군구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이 있음
- **(위탁업무)** 위탁업무는 읍면동 행정사무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임
- 위탁업무로는 ① 주민자치센터 운영, ②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③ 지역자원관리, ④ 지역복지관리, ⑤ 안심안전관리, ⑥ 지역생활관리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음
- **(주민자치업무)** 주민자치업무는 읍면동 행정기능과 관련이 없는 주민자치회 고유업무로서 순수 근린자치를 위한 업무임
- 주민자치업무로는 ① 문화교육분야, ② 지역자원관리, ③ 지역복지분야, ④ 안심안전분야, ⑤ 주민공동체분야, ⑥ 지역생활분야, ⑦ 지역경제 소득사업 분야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음

주민자치회 지원방안

- 중앙정부의 주민자치회 지원체계로는
 - 첫째, 시민욕구가 다양해지고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가 요구됨
 - 둘째,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매뉴얼 개발과 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의 안내서 역할이 요구됨
 - 셋째,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관련 인센티브 방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주민자치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위상과 지위를 뒷받침해줄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야 함

- 다섯째, 성공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지원책으로는
 -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
 - 둘째,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가 요구됨
 - 셋째,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를 마련해야 함
 - 넷째,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회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문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함
 - 다섯째, 주민자치회 조례 재정 시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차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여섯째,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추진상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주민과 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로는
 - 첫째, 주민자치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 둘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셋째, 주민자치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파트너로서의 자치활동을 위한 자주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요구됨
 - 넷째,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현안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사업과 지역 특성

을 고려한 지역 특성화 사업, 지역경제 수익사업 등의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다섯째,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총회, 주민투표, 주민간담회, 마을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함

종합

-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수행업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주민자치회 지원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지원책, 주민과 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로 세분하여 제시함
- 강원도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원방안을 적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공동체,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협력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건위 (2013),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강성권·오재환 (2007), 「부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연구」, 부산발전연구원, 현안연구 보고서, 2007-5
- 김병국·최철호 (2012), 「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 시론적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88호)
- 김장민 (2012),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진보정책연구원 연구브리핑(국내정치), 2012년 7월 3일
- 김찬동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필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 「주민자치의 성공전략」, 자치행정연구, 제5권, 제1호
- 김필두 (2011),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연구」, 2011 한국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 김필두 (2010년), 「내일의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월간 자치발전, 2010년 12월호
- 김필두·류영아 (2008),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홍수 (2013), 「주민자치센터의 경험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생 이슈포커스, 2013년 5월
- 곽현근 (2009), 「지역발전의 보완적 패러다임으로서 동네거버넌스의 실험」,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곽현근 (2012), 「읍면동 근린자치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학술세미나 자료집
- 곽현근 (2012),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민주성 쟁점들 : 근린단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류순현 (2013),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방안」, 생 이슈포커스, 2013년 5월
- 민현정 (2012), 「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포커스광주

- 민현정 (2012), 「근린자치와 주민자치, 광주광역시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 박세정 (2008), 「주민참여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센터 : 현실과 향후과제」, 사회과학연구 제24집, 2호
- 심익섭 (2012),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91호), 2012년 12월
- 심익섭, 「주민자치와 지역발전의 관계」, 자치행정연구, 제5권, 1호
- 이길영 (2013), 「알기 쉬운 지역발전 정책 : 주민에게 다가가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과 발전, vol 12(2013년 여름호)
- 이복수 (2000), 「주민참여와 주민의식, 자치시대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 모색」, 자치공론 2000년 5월호
- 오수길 (2010),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방정부 학회 2010 동계학술대회
- 오완석 (2013), 「마을공동체회복사업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제3권 2호(2013년)
- 이자성 (2010),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경남 발전연구원, 이슈분석 2010-11
- 이자성 (2012),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요쟁점 및 향후 과제」, 경남정책 Brief, 2012-19
- 이자성 (2012), 「동네자치로서 읍면동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조명」, 지역논단
- 이자성 (2012),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경상남도 대응방안」, 경남정책 Brief, 2012-21
- 안성호, 「스위스 코뮌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 발전방향, 자치행정연구」, 제4권, 1호
- 안전행정부 (2013),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계획 보고 - 개편위원회 협력형 주민자치회 모델(안)을 중심으로」
- 안전행정부 (2013), 「2013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안전행정부 (2013), 「2013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안전행정부 (2013),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계획 보고」
- 안전행정부 (2013),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워크숍 자료」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마을안전·지역복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 안행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31곳 선정」, 2013년 6월 5일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우리 마을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지역 10개 읍면동 최종선정」, 2013년 9월 5일
- 지역농업연구원 (201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 지역농업연구원 17차 정기세미나
- 조석주 (2003),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석주 (2012), 「지방행정체제 및 자치구 개편동향과 정책제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Focus, 제46호
- 전대욱 (201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 악)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대욱·최인수·박승규 (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대욱·최인수 (2013), 「생활안전문화 표준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안심마을 시범사업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2013), 「충남형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워크숍」
- 최인수 (2013),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인수·전대욱 (2013), 「해외 선진국 불법 주정차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인수·전대욱·김건위·고경훈 (2013), 「공동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연구」, 안전행정부
- 한상우 (2013), 「지역공동체 주민자치의 중요성」, 생 이슈포커스, 2013년 5월
- 하봉운 (2005),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5-44
- 행정자치부 (2002), 「전국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집(2)」

참고자료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9호, 2013.5.28,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제25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① 제24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제25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9.16.]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141호, 2013.9.16.,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 2 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2개 읍·면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지역대표위원 : 읍·면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10명
2.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3. 직능대표위원 :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2.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장 추천위원 3명
2. 읍·면 이장협의회 추천 3명
3. 읍·면 번영회 추천 3명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연령·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

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3조(고문) 주민자치회의 자문과 조언등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특별법 제29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자치회장에 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7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 제23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2141호, 2013.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간성읍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고성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4.]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147호, 2013.11.4.,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벽지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 2 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지역대표위원 : 관할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5명
2.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3. 직능대표위원 :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1.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2.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

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장 추천위원 4명
2. 관할 이장협의회 추천위원 2명
3. 해당 지역 대표 연합단체 추천위원 3명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연령·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2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특별법 제29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2147호,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인제읍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특징 및 활동계획

※ 안전행정부(2013), 「음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워크숍 자료」중 시범실시 대상지역별 주요 추진계획을 정리한 것임.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은평구 역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48,900명 • 서울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 • 30여개 단체가 활동하는 지역 자원과 유대로 마을협동조합 설립 	<p>(안심마을형) 「여마을 생활안전 지킴이」마을공동체에서 ‘Safe 역촌 만들기’를 목표로 파출소, 학교 등과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감시단 구성 및 안전 위해요소 발굴 조사, 등하교길 안전지도 제작, 다중집합시설 장애인·어린이·노인 보호 활동 전개 -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안전교육(심폐소생술 교육, 어린이 안전보행 교육, 자전거 안전 교육) 및 4대약 체결 주민홍보 <p>(지역복지형) ‘역촌동 우리동네 복지두레’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몸 어르신 1:1(봉사자:직원·통장·독거노인) 인부 서비스, 반찬 사랑, 사랑의 빵 나눔사업 등 전개 <p>※ 2012년 실적 : 후원업체 37개소, 1,000여명 지원(58,220천원)</p> <p>(마을기업형) 지역 내 폐자원 재생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p>
서울	성동구 마장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26,084명, 10,103세대 거주 • 상가와 일반주택, 아파트가 혼합 • 성동구 내 기초 수급자, 장애인 등 65세 이상 주민 최다 거주 지역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물 관련 유통업체 밀집 	<p>(안심마을형) 생활안전 마을 지킴이, 민관학 동반자적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올레 지킴이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안심귀가 마을지킴이, 민관합동 마을청소 봉사인 값꿈이 봉사단, 지역 자율방재단, 주택화재 안전 지킴이 운영 - 마을네트워크 소통간담회 정례회, 동반자적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 동네 지킴이 역할 수행 <p>(지역복지형) 무문현담(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중물 복지회의체(집수리 지원, 사랑의 쌀단지 운영 등), 무한돌봄 봉사단, 행복복지기 구성 운영 등 <p>(마을기업형) ‘두 마리 토끼(수익과 일자리를 잡자)’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결연지(농산물), 축산물시장과 연계한 행복나눔 가게 운영 및 ‘행복 가득, 이야기 가득’북 카페 운영 및 마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연제구 연산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6,650명, 6,130세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공존하는 복합 형태 	<p>(안심마을형) 주민자치회에 참살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폭력, 불량식품, 방범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안전지킴이단 운영, 관내 토목 지구대, 연산 경찰서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상시 안전망 유지,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행북한 학교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엄마와 함께하는 다도 교실, 마을 운동회 등)을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연산 1동 청소년 주민자치회 운영 <p>(지역복지형) 민간사회안전망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복지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독거노인 기정에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건강 상태 확인), 유아용품 무상 대여 서비스, 사랑의 케이크 전달사업 추진, 폐가 활용 실버문화공간 조성 <p>※ 2013.3.31현재 민간사회안전망 후원금 잔액 34,205천원</p> <p>(평생교육형) 복지마을, 안심마을 형성을 위한 마인드 교육,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육성</p> <p>※ 부산시 연제구는 제7회 평생학습 대상 수상</p> <p>(마을기업형) 마을이 함께하는 열린 북 카페, 행복을 나르는 연1 공동 배달서비스 사업 추진</p>
부산	동래구 안락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3만 3천 여명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시 인구 4만에 이르는 동래구 최대 인구규모의 동이 될 전망 해운대구, 수영구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온천천을 구민 휴식공간으로 개발 	<p>(안심마을형)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업소, 내집앞 365 청결운동’, ‘학생 참사랑 나눔 협의회’, ‘자율 방재단 및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관내 상습 불결지 주 1회 환경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시범 거리 운영 등 <p>(지역복지형) ‘1379 나눔 서비스 활동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된 이웃에게 일상(13)적으로 친구(79)처럼 다가가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대상 매월 1회 가정방문 및 수시 인부 전화(일동용품 지원, 집안청소, 밀반찬 지원, 말동무 등) <p>(도심창조 및 평생교육형)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변화사업’ 및 ‘로하스 이카데미’ 등 평생 학습 강좌 운영</p>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대구	수성구 고산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30,086명, 가구수 총 8,758호 (단독 1,056, 아파트 7,320 등) 농촌생활권이 면적의 89%, 인구의 9.7%를 차지하는 도·농 복합지역 	<p>(안심마을형)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동행력단체, 자생봉사단체, 자연부락마을회, 경찰지구대, 119안전센터, 농업기술지원센터 등과 연계(고산 안심마을망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마을 : 주민자치회·지율방범대 합동순찰 및 운영회의 지원, 야간 위해 요소 조사·신고 등 교통안심마을 : 교통방해 및 불편시설물 조사 및 정비, 교통안전 관련 지도 제작 및 계몽 등 재난안심마을 : 화재 및 풍수해 대비 시설 조사 및 정비 등으로 자연부락중심으로 ‘화재안심마을’ 지정 추진 농작업안심마을 :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 관련 사업 등
인천	연수구 연수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24,882명, 가구 9,981호 (단독 1,947, 아파트 8,034) 연수구의 중심지역으로 아파트와 상업지역이 혼합 	<p>(안심마을형) 안전하고 깨끗한 연수2동(부제 : 반짝반짝 빛나 길)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동 상가번영회원과 연계한 음식점 주변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선도 활동 추진 <p>(지역복지형) 틈새계층 돕기 위한 솔인발 베품시장(부제 : 소통 그리고 어울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에게 아나바다 운동을 알리며 아이들에게 경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베품시장을 통해 이익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을 돕기에 사용 <p>(평생교육형)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교실(부제 : 행복나눔 재능 기부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수강생은 과정 수료 후 2~3회 지역 행사 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지역 내 인적자원 확보
광주	남구 봉선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7,024명 중 노인(12%), 복지지원 세대인 저소득층(50.8%)의 비중이 높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조화된 주거지역과 교육·의료·종교시설 및 전통시장이 함께 어울어진 마을 	<p>(안심마을형) 진 주민 안전교육 이수, 부영이네트워크, 주민불편조사단 운영, 5분 대기 안전활동가 운영, 보안등 설치, 안전거점공원(노들마당) 조성 등</p> <p>(도심창조형) 전통시장이 있어 행복한 「봉선노들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상인과 주민이 주머니 받거니 소통 상생하는 창조마을 조성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광주	북구 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0,604명, 가구 4,339세대 방직산업(일산방직, 전남방직)의 유래지역으로 70년대 경제부흥기 선도 	<p>(안심마을형) 주민 스스로 학교폭력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문화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사랑지역협의회와 ‘학교폭력 고민 반(半), 학생사랑 기쁨 두배’ 프로젝트 추진 및 올리 동네 자율방범의 날 운영 <p>(지역복지형) 도심 공동화로 노인구 및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으로 홀몸 어르신 을 위한 사랑의 요구르트 전달사업, 사랑의 돼지 저금통 분양사업, 뽕주 사랑미 사업,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 운영</p> <p>(도심창조형)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 공동화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시장 김물(대원시장)을 문화·예술 및 청년 창업 거점 공간으로 재생하여 주민 소통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 <p>※ 광주광역시 민선5기 특수시책인 ‘행복한 창조마을’로 선정되어 주민이 머무르고 가꾸는 주민주도의 도심재생사업 추진중</p>
광주	광산구 운남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33,703명, 가구 11,235호 (단독 132, 아파트 10,923) 99% 이상 주민이 아파트 거주 2001년부터 마을주변에 주민 스스로 마련꽃을 심고 가꾸어 ‘목련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음 	<p>(안심마을형) ‘지역사랑 목련 하그 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주부들로 구성된 학교 주변 정거 순찰활동 ‘페트를 맘’ 운영 / 범죄 예방 및 취약지 관리를 위한 ‘365안전지도’ 제작 / 범죄 우려지역 정비를 통한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 <p>(지역복지형) ‘나누고 더하는 목련 복지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투계터 운남나눔회, 운남노인복지관, 자생단체가 함께 하는 사업 추진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메신저 사업’ 추진 <p>(다문화어울림형) ‘무지개속 일곱빛깔, 가치 다같이 운남동’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지개 운남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한마음 축제’, ‘한여름 밤의 열린 음악회’, 추진
대전	동구 기양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23,055명, 가구 8,774세대 전형적인 주택 밀집지역 문화유적지가 다수 있으며, 관내 초·중고 5개와 2개의 대학이 위치 	<p>(안심마을형) 다수의 학교가 있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4대아 축결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 안전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아이 학교폭력 지키기(골목길 순찰활동,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취약 지역 방범 카메라 설치), 다함께 동네 한바퀴 돌며 이웃과 정 나누기(동네 골목길 돌기, 이웃집 알기 운동) 추진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울산	북구 농소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41,825명, 가구 12,612세대 순금산과 천마산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아늑한 고장으로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가 어우러진 전원도시 	<p>(지역복지형) 복지 나눔 우리모임(지역사회협약체)을 결성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조성</p> <p>(지역자원형) 전래되어 내려오는 민속놀이(흥룡가마놀이 및 빗꽃축제)를 재연하는 행사를 지역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주민 화합의 장 마련</p> <p>(안심마을형) 자율방범대, 상가, 자생단체 등과 연계한 청소년 지킴이 활동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타기 좋은 안전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 문화 조성, 우범지역, 사고 및 취약지역 대상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추진으로 사고 미연 방지 <p>(지역복지형) 카뮤니티 맵핑 과정을 통해 어렵고 소외된 지역의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책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군고구마, 김장 나누기, 어르신 온천 나들이, 경로당 방문행사 등 <p>(지역자원형) 우리지역 인적·물적 자원 조사를 위한 우리마을 보물찾기, 달천 철장·달천 편백산림욕장 관광 자원화, 전국 최대 부추 생산지로 부추 브랜드화</p>
세종	부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6,728명, 가구 2,904세대 (단독 1,853, 아파트 1,051) 부강 산단의 12개 업체가 있으며, 경부선, 경부고속도로가 자리 잡고 있는 금강 상류 지역으로 배추산지 	<p>(안심마을형) 슬로진 ‘우리 부강지킴이’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외 13개 단체, 부강면 체육회 60명, 학생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전거 순찰대, 시민순찰대, 안전 귀가 지킴이 콜센터 운영 <p>(지역복지형) 슬로진 ‘행복한 부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외 9개 단체, 2개 종교단체, 여성가족부 등 복지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복지회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소외계층 청소년 돌봄 <p>(지역자원형) 슬로진 ‘새로운 부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의 새로운 편입지역으로서 적극적인 지역 홍보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로컬푸드 사업 등)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2,618명, 가구 6,648세대 수원의 교통·상업·금융의 중심지이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안에 자리한 미올로 8개의 학교가 집중되어 있음 	<p>(안심마을형) 동 주민센터, 파출소, 방범기동대와 연계한 「행궁동 안전 네트워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터 지킴이」학교폭력·성폭력·청소년 폭력 조기근절, 「행안지모(행궁동 어린이를 위한 안전 지킴이 모음)」 확대, 세대공감 사랑 나눔, 명예 청소년 경찰 운영 등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9,979명, 가구 7,881세대 (아파트 1,598, 단독·다세대 6,284) 교육과 문화시설 그리고 체육시설이 잘 구비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80년대 토지구획정리지역으로 단독·연립·빌라가 많은 중산층 주거 밀집지역 	<p>- ‘문화재 지킴이’ 활동으로 화재 없는 마을 만들기, ‘생태교충 수원 2013’ 개최를 통한 자동차 사고 없는 마을 만들기</p> <p>(지역복지형) 직능단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산재된 복지 재원 나눔의 구심체 역할 수행</p> <p>- 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송죽 행복 트리미’(반찬지원 사업, 사랑의 앙플럼 day 운영, 의료 재능 기부 사업, 폐지모아 행복한지·놀라운지·사랑나눔지 등) 운영</p> <p>(도심창조형)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노후된 일반 주택을 아름다운 공간, 건강한 마을로 창조</p> <p>- 그림이 있는 길거리 가든 만들기, 솔대마을 건강길-건강한 학교 가는길, 행복한 동행 송죽골 산책로 조성 등</p>
경기	오산시 세마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4,827명, 가구 5,277세대 세마동은 농촌마을이 있는 전원도시에 택지개발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도농 복합지역 	<p>(안심마을형) 안전생활 인프라 구축, 학생 등하교 안전 지킴이, 여성 안전이동지원,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연계 등</p> <p>- 안심마을분과를 운영하여 보안등, CCTV 등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자를 통한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생활안전협의회 운영 등</p> <p>(지역복지형) 빈틈없는 복지대상 발굴, 종합적인 관리 네트워크 구축, 형평성 있는 복지제공, 춤 일자리 제공 등</p> <p>- 지역복지분과를 운영하여 복지지도 제작 및 관리, 자치회 하부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한 실무추진단 운영 등</p> <p>(도심창조형) 마을공동체 복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 등을 추진하여 마을마다 특색있고 고유문화를 가진 마을 조성</p>
경기	부천시 송내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24,843명, 가구 9,047세대 인천시 경계지역이며, 송내역과 중동역이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신구 아파트와 단독이 혼합된 주택지역과 공업지역이 상존 	<p>(안심마을형)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자유총연맹 학교귀환동 지원</p> <p>(지역복지형) 희망의 러브하우스, 홀몸 어르신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 나눔이, 어르신 무료 한방진료, 행복 풍나물 제배, 이웃돕기 일일 찻집, 사랑의 경로 위한 찻집 등 추진</p> <p>(지역자원형) 제15회 소사복숭아 축제, 전철역 2개소, 성주산, 원도심의 넓은 녹지대를 이용한 원도심의 거닐만한 장소 개발 및 축제 개최</p>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경기	김포시 양촌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25,268명, 가구 11,377세대 (일반주택 5,107, 아파트 6,270)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거주 지역과 구도심이 혼합된 형태이며 김포시 최대의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새터민 이주민이 혼재 	<p>(평생교육형) 실직자 교육,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교육도시 실현</p> <p>(지역복지형) 주민자치회 산하에 지역 봉사단체 및 기관과 함께 마을 복지협의회를 구성, 향후 복지재단 창립을 통해 지역 복지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기반구축) : 독거노인 반찬배달, 음식 나눔, 빨래, 알뜰장터 2단계(화산기) : 대문화 정착 사업, 새터민 경제적 지원, 일자리 소개 등 3단계(평가 및 비전수립) : 마을 복지정책 심포지움 등 <p>(마을기업형) 5개 이상을 목표로 매년 1개 이상 마을(사회적)기업 창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ain 오라니 장터’를 활용 한우를 이용한 대표상품 개발 및 판매, 오라니 장 처 상표 관리 및 홍보를 통한 표준매뉴얼 수립, 지역상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표권 부여 및 확대 한우와 축제라는 컨셉트를 통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터였던 오라니 장터를 되살리고 브랜드화 추진
강원	고성군 간성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7,497명, 가구 3,360세대 동서교통로의 요충지이며 중부 동안형 기후로 산간 고랭지와 해안 평야지가 공존 	<p>(안심마을형) 주민자치회 중심의 생활안전 강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 주민센터, 치안센터,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지역 순찰대 구성 및 주 1회 위협지역 순찰, 등하교길 교통지도 및 안전귀가 활동 추진 읍 주민센터, 119안전센터, 이장단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안전 네트워크망 운영 읍 주민자치센터, 군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확대 추진 / 초동생 및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p>(지역복지형) 복지소외계층의 복지지원 배분의 중심체 역할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청소년체와 연계한 저소득가구 소득 및 청소년사업(저소득층 30가구 선정, 분기별 1회 추진) 새마을 부녀회와 연계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알뜰장터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강원	인제군 인제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9,661명, 가구 3,990세대 동서관통 44호선 및 46·31호선 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요충지로 전국 최고의 모험관광지 	<p>(안심마을형)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안전 공동체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안전 : 순찰대 구성 운영, 등하·교길 교통안전 지도, 안전한 귀가활동 지원, 학교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공시설물(가로등, 맨홀 등) 상시 모니터링 등 ※ 인제군정,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범대, 모범안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안전지킴이, 위생협회, 자율방재단 등과 연계 <p>재난안전 : 지역 방재력 강화 모델 개발, 재난체험 교육 실시 / 지역 방재력 강화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 주관 교육 교재 보급 및 지역 방재력 강화 국민 운동 추진
충북	진천군 진천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29,984명 / 14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 ’13. 4월 우석대학교 아셈캠퍼스 건립공사가 착공되어 향후 젊은층의 인구 유입과 더불어 교육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p>(지역복지형) 모두 다 행복한 ‘도돌이표 봉사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생, 경로당 어르신이 결연하여 서로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어르신과 어린이로 ‘도돌이표 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요양시설, 독고노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 실시 ※ 활동내용 : 밥벌, 재롱잔치, 진통놀이, 떡 만들기, 인형극 등 <p>(평생교육형) 찾아가는 1마을 1장기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센터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1개 마을 단독형 또는 2~5개 마을 연체형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교육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부, 결혼이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실시
충남	천안시 원성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0,691명, 가구 4,645세대의 원도심 주거지역 천안(天下大安)의 지명 탄생설화가 깃든 천안의 진산 태조산 기슭에 위치 	<p>(안심마을형) WHO 공인 국제안전도시, ‘천하대안’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및 범죄위험 요소 파악을 위한 ‘동네 한바퀴’ 마을안전지도 만들기 추진, 어린이·청소년 대상 ‘자전거 학교’ 및 ‘어린이 안전 학교’ 운영 -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운영 및 안전 네트워킹 구축 <p>(지역복지형) ‘사람&희망’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제를 주민의 자원 활동으로 해결하는 지역 맞춤형 주민공동체 봉사단 운영 및 ‘청년의 미래, 행복한 노인 공동체’ 사업 추진 - 사회적 기업 ‘천안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한 노인 주거 개선 사업, 사회적 기업 ‘즐거움 밥상’과 연계한 ‘즐거움 도시락’ 사업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충남	논산시 별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2,780명, 가구 1,442세대 (농가 973, 서비스업 등 기타 469) • 대둔산과 감천이 있으며 임야 82%, 농가 67%의 농산촌 지역 	<p>(도심창조형) 'Making the Story of Maoul' 프로젝트 - 원성1동 마을 인문학 강좌 및 고사리 나눔 장터 등 운영</p> <p>(안심마을형) 산불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하·동절기 계곡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재해 위험시 마을 순찰 참여 이장 지원, 자율방범대 등 안전관련 단체 위문 격려 활성화 유도</p> <p>(지역복지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 해맞이 행사, 이웃돕기, 경로당 쌀지원,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내고장 사랑 운동, 독거노인 사랑의 빨래방 운영 및 자연 정화 활동</p> <p>(다문화어울림형) 다문화인 가정 만남의 날 행사, 한글 교육, 학용품지원, 친정방문 항공비지원 등</p> <p>(마을기업+지역자원형) 지역 자원인 대둔산 수락계곡을 활용한 얼음 축제 등 추진</p>
충남	아산시 탕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20,800명, 가구 9,731세대 (단독 2,633, 아파트 등 7,098) • 농촌지역에 ㈜삼성디스플레이 입주로 도농융합지역으로 변모 	<p>(안심마을형) 지역 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가정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유 넣어주기 사업 추진 - 지역 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와 연계</p> <p>(지역복지형) 목요장터 수익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사랑의 반찬 나누기 등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p> <p>- 목요장터의 남은 농특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반찬 나누기</p> <p>(지역자원형) 주민자치회가 주 1회, 지역 내 여러 단체와 함께 목요장터를 운영하여 도농교류 및 주민화합을 모색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익기반 조성</p> <p>(도심창조형) 탕정의 명물 포도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포도농컬 터널 조성)으로 도·농 주민들 간 소통공간으로 활용</p>
충남	예산군 대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2,107명, 가구 936세대 • 국내 6번째로 중부권 슬로시티 지역, KBS 전원 드라마 '산넘어 남촌애는' 촬영지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p>(안심마을형) '청소녀 위험지역 지도 만들기' 추진 - 마을 곳곳의 청소녀 위험지역을 찾아 지도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순찰</p> <p>(지역복지+마을기업형) 의좋은 형제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취약계층 및 주민 일자리 사업 추진 / 대흥면 주민으로 구성된 의좋은 형제마을 영농조합과 농산물 및</p>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p>가공품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지원형) 대흥면 보존회, 형제마을 영농조합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지원 활용(대흥 동현, 봉수산 휴양림 등)</p> <p>(안심마을형) 5일장 고산시장의 주정차 질서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 계도 / 관내 지역개발 사업 의견 수렴 및 재해 위험 요소 사전 예방 (지역복지형) 보육 사각지대 아동 돌봄센터 및 취약 아동 공부방 운영 지원 등 - 고산향 새싹 아동 돌봄센터 지원 및 고산성당 내 위치한 공부방 운영 지원 (평생교육형) 성인 문화교육을 통하여 소외계층에게 나이를 초월한 배움의 기회 제공,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p>
전북	완주군 고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4,828명, 인구 2,081세대 완주군의 중앙에 위치 점근성 좋으며 면이지만 초2, 중1, 고1이 있는 교육의중심지 	<p>(안심마을형) ‘화(火) 내지 않는 옥산 조성’ - 옥산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항상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산재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와 연계하여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및 예찰활동 강화 (지역복지형) 살기 좋은 옥산 동네 복지 -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해 능동적 맞춤형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함께 사는 복지 공동체 구현 (지역지원형) 청암산구슬피 등산축제 개최 - 5회째를 맞이하는 청암산구슬피 등산축제를 주민자치회가 주도하여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특산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p>
전북	군산시 옥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2,872명, 인구 1,236세대 (단독 1,150, 아파트 86) 도심지역에 최근 접한 도농복합의 농촌지역으로 지리적인 위치와 교통 요건으로 새만금시대의 새로운 중심 지역 	<p>(안심마을형) ‘범외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마을 방범대’, ‘학교 보안관’ 운영 - 마을 안전지도 제작 및 ‘지킴이집’ 운영, 밝은 디자인 ‘골목길 담벼락 보수’ 등 - 주민자치회, 상인회, 학부모회,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을 방범대 및 학교 보안관 운영 (지역복지형) ‘동네 부엌’ 설치(방과후 어린이 휴게실 운영 병행) - 현재 순천시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아동급식 업무 위탁 (도심창조마을기업+평생교육+지역지원형) 복합형 사업「날아라 주민자치」</p>
전남	순천시 중앙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4,455명, 인구 2,062세대 (단독 1,062, 연립 8, 아파트 2 등)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합된 기존 도시의 중심지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전남	목포시 신흥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8,890명, 가구 6,644세대 (단독 1,936, 아파트 4,708) 인구의 79%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목포시 제1의 주거와 중심 상업 혼재 지역(목포시 23개 동 중 인구 규모 2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천시 마을 만들기 활동가 그룹 대상 창작 공간 제공(창조센터 친태만상) 운영으로 마을 만들기 협업 마을기업 「친태만상」 창업(동네 부엌, 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 진행) <p>(안심마을형) 4대 사회적 근절을 위한 「안전 슬레짐」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책임자(파출소, 주민자치회 등), 안전취약자(학생, 주민 등), 안전수호자(방범대원, 생활안전협의회 등) 3자 협약 여성·가족분과, 학교·식품분과를 통한 교육·간담회·캠페인 실시 및 안전취약지 주변 방범시설 확충 <p>(지역복지형)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사랑의 디딤돌’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시각지대 해소 10대 시책’ 대상에 포함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관내 협업업소(음식점, 의류업체, 학원 등) 10% 할인제공 나눔장터(벼룩시장, 바자회, 직거래 장터 등) 운영으로 재원 확보 <p>(도심창조형) ‘장미의 거리’ 브랜드 제고 및 소공원 명소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행사 개최, 장미의 거리 간판 교체 및 진열대 정비사업, 달맞이공원 명소화 추진
경북	안동시 강남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0,450명, 60여개 기업체 소재 도농복합지역으로 관공서 및 정부투자기관이 밀집한 지역 	<p>(안심마을형) 공무원 인력 부족의 한계를 민간부문에서 보완하고 내 마을 내 가족을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마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월2회 야간 활동 실시 및 통장협의회를 통한 불법 흡수막 및 도로의 위험 광고물 자진 정리 유도 및 지원 <p>(지역복지형) 도농복합지역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복지(독거노인 말벗 및 반찬봉사 실시),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교육실시 <p>(마을기업형)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 능력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센터를 아나바다 장터로 운영하여 주민자치회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판매수익의 일부를 불우이웃돌기에 이용

시도	지역명	주요 특징	활동계획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5,880명, 가구 13,709세대 (단독 6,568, 아파트 7,141) • 경남 행정 중심지인 창원시의 중심부에 위치, 행정업무지역, 주거지역, 공원지역, 상업지역이 존재 	<p>(안심마을형)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지속적·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건 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불법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클린 용지 만들기’ 캠페인 전개, ‘실버 봉사단’ 구성·운영, 청소년 선도활동 등 <p>(지역복지형) 주민 주도의 재능 나눔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이웃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마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 재능기부 ‘주민자치위원과 함께하는 문화생활’, ‘용지동 재능나눔단(Probono)’ 구성·운영 등 <p>(도심창조형) 주민 주도로 ‘이야기가 있는 용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호수, 메타세콰이어 거리 등을 통한 힐링로드 조성, 용지마을축제(추억 공 모진, 카페거리 커피축제 등) 추진
경남	거창군 북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629명, 가구 824세대 (과대 면적지역) • 주민의 43%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주거마을은 해발 300~700m 사이에 자연 마을 형성 	<p>(안심마을형) 주민자치회와 자율방범대가 협력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주2회 야간 순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발적인 생활 안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대청결 운동, 공중화장실 관리 등 행정의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피서철 뿐 아니라 연중 청정하고 깨끗한 복산 만들기 - 산불발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어 주민자치회에서 명예산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여 관내 산림보호 <p>(지역자원형)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상표 등록(거창하게 노래하는 농부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4월 현재, 특허청의 등록절차 이행 중 <p>(도심창조형)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북상 만들기 추진</p> <p>(평생교육형) 숲속작은음악회 및 발표회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평가</p>